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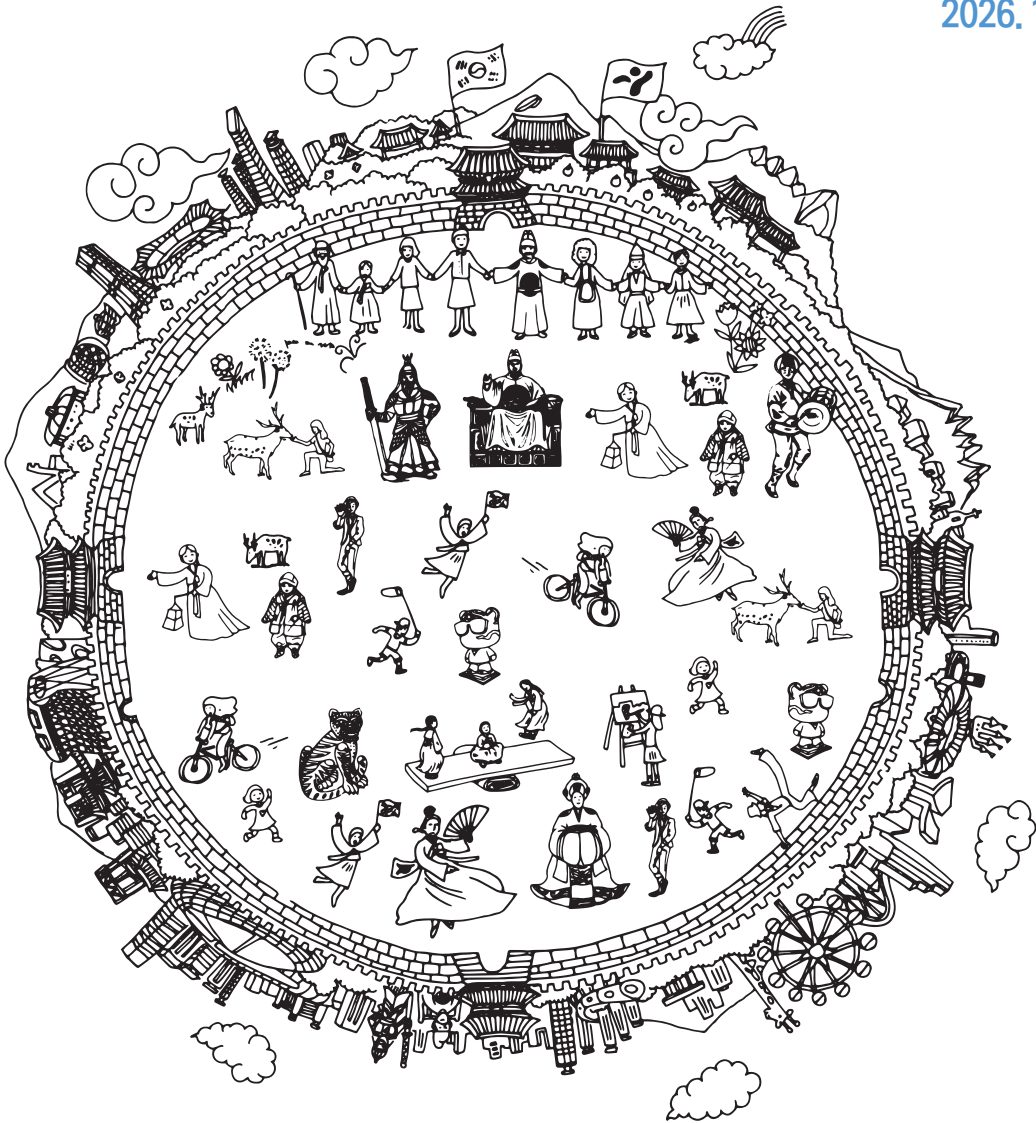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4115호
2026. 1. 1.(목)



목 차

◆ 자치법규 등

[조 례]

제9928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 2

[규 칙]

제4744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4

제4745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7

◆ 공 고

제2025-3649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12

제2026-2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 14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규칙]

제1111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26

◆ 구 고 시

제2026-1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연장 및 해제, 지형도면 고시(동작구) 32

제2026-2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연장 및 해제, 지형도면 고시(동작구) 69

자치법규 등**[조 례]****◆ 서울특별시조례 제9928호****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1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항 4호 중 “2025년 12월 31일까지” 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도시철도공채 매입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지속되는 경기 둔화에 대응하여 서민·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사업용 소형차에 대한 도시철도공채 의무매입 면제기간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비사업용 소형차 도시철도공채 의무매입 면제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3조제1항제4호)

[규 칙]**◆ 서울특별시규칙 제4744호****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1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제7조제7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제7조제7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3호 중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을 “국제개발협력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5. 국제기구·회의 유치 및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6. 시티넷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제3항 중 “법무담당관 및 법률지원담당관”을 “법률지원담당관”으로 한다.

제11조제8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서울투자진흥재단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17조의2제3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어르신에 대한 사전 예방적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11. 어르신 등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12.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역량강화에 관한사항
13. 환경보건정책 수립·시행 및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14. 공중위생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5.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사항(수돗물 제외)
16. 공중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17. 공중화장실에 관한 사항
18. 체력단련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제17조의2제5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시립병원(장애인치과병원, 서부장애인치과병원)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17조의2제5항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

14. 시립병원(은평병원, 시립정신병원)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17조의2제7항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5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제2호 중 “(서울의료원 포함)”을 “(은평병원, 시립정신병원, 장애인치과병원, 서부장애인치과병원 제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시립병원 통합 홍보전략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6.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

제17조의4제6항제15호 중 “기록문화관, 기록관리시스템”을 “기록관리시스템, 옛시장실 재현 공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서울기록원 운영의 지도·감독(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관한 사항 제외)

제17조의7제3항제1호 중 “상표”를 “상표, 청소년 및 사회복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청소년, 사회복지, 식품”을 “식품”으로, “의약범죄”를 “의약 범죄”로 한다.

제19조제4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도시기반시설 선제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20조제5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한다.

제69조제2항제18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본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총괄

제69조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본부 건설공사 품질점검계획 수립 및 품질지도관리

제145조제6항제7호 중 “공직자비리신고센터 및 공익제보지원센터”를 “공익제보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부조리신고보상금”을 “공익제보자 보상금 및 포상금”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사무분장 정비 등을 위하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 추진력 강화를 위한 소관 사무 조정

- (글로벌도시정책관) 해외지역 교류·국제협력 사무 수행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도시외교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 사무분장 정비

▶ 도시외교담당관 : 중앙아·서남아·아세안·중동·중남미·아프리카 등 해외지역 교류 (←국제협력담당관)

▶ 국제협력담당관 : 국제기구·회의 유치 및 지원·협력, 시티넷 사무국 운영 사무 (←도시외교담당관)

- (시민건강국) 유사연관 기능의 통합적 수행 등을 위해 보건의료정책과건강관리과정신건강과감염병관리과공공의료과 사무분장 정비

▶ 보건의료정책과 : 방문건강관리(←건강관리과), 환경보건 관련 업무 (←감염병관리과)

▶ 건강관리과 : 대사증후군 관리(←보건의료정책과), 장애인치과병원 관리(←공공의료과)

▶ 정신건강과 : 마약류 대응·재활(←보건의료정책과), 시립정신병원 관리(←공공의료과)

▶ 공공의료과 : 시립병원 통합 홍보전략 수립·추진, 호스피스 관련 사무분장 추가

- (민생사법경찰국) ‘청소년·사회복지 수사’ 사무를 경제수사과로 이관 (←안전수사과)

- (건설기술정책관) 기반시설 관련 종합적 정책 수립을 위해 기술심사담당관에 ‘도시기반시설 선제적 유지관리’ 사무 이관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정책과)

-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본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총괄’ 사무를 총무부에 이관하고(←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 사무분장 정비

나. 규칙상 소관사무 명시 및 조문 정비

- (글로벌도시정책관)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운용 자금 명칭 변경사항(대외협력자금 국제협력계정 → 국제개발협력자금) 반영

- (경제실)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에 따라 금융투자과 소관 사무로 ‘서울투자진흥재단 지도·감독’ 조항 명시

- (디지털도시국) 공공기록물법 관련 서울기록원 지도·감독 예외사항 조정 및 서울기록문화관 운영 종료 등을 반영해 정보시스템과 사무분장 정비

-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 운영, 공익제보자 보상금 및 포상금 업무 관련 근거 규정 변경사항 반영을 위해 조사담당관 사무분장 정비

다. 개방형 직위 관련 변경사항 반영

- 콘텐츠담당관, 법무담당관의 개방형 직위 변경(해제)에 따른 규칙 개정

◆ 서울특별시규칙 제4745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1월 1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총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총 계	11,730	4,793	429	1,140	5,141	227
-----	--------	-------	-----	-------	-------	-----

같은 표 일반직 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직 계	10,689	4,743	420	350	4,951	225
-------	--------	-------	-----	-----	-------	-----

같은 표 5급 소계란, 녹지란, 간호란, 행정또는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5급 소계	1,637	1,094	56	58	371	58
-------	-------	-------	----	----	-----	----

녹지	29	18			11	
----	----	----	--	--	----	--

간호	28	4			24	
----	----	---	--	--	----	--

행정또는시설	81	65			13	3
--------	----	----	--	--	----	---

같은 표 6급 소계란, 행정란, 공업란, 녹지란, 수의란, 간호란, 식품위생란, 시설란, 시설관리란, 행정또는시설란, 행정·공업또는시설란, 녹지또는시설란, 통신운영란, 기계운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6급 소계	3,740	1,975	177	106	1,383	99
행정	1,432	890	147	44	282	69

공업	351	106	6	5	232	2
녹지	79	40			39	
수의	14	6			8	
간호	151	17			134	
식품위생	7	3			4	
시설	620	352	3	2	244	19
시설관리	23	4			19	
행정또는시설	57	54			3	
행정·공업또는시설	85	76			8	1
녹지또는시설	3	1			2	
통신운영	6	2		1	3	
기계운영	81	1		1	79	

같은 표 7급 소계란, 공업란, 간호란, 시설란, 방송통신란, 시설관리란, 행정또는시설란, 토목운영란, 전기운영란, 기계운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7급 소계	3,257	1,316	122	130	1,632	57
공업	401	19	6	10	364	2
간호	141	13		3	125	

시설	546	234	3	5	296	8
방송통신	62	35	3	4	20	
시설관리	6	1			5	
행정또는시설	41	36			3	2
토목운영	1				1	
전기운영	32	2			30	
기계운영	26	2	1		23	

같은 표 8급 소계란, 공업란, 식품위생란, 시설관리란, 운전란, 전기운영란, 사무운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8급 소계	1,073	117	37	42	876	1
공업	100	4	4	4	88	
식품위생	3				3	
시설관리	252			2	250	
운전	74	10	3	11	50	
전기운영	5				5	
사무운영	89	37	10	4	37	1

같은 표 9급 소계란, 공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9급 소계	486	3	3	2	478	
-------	-----	---	---	---	-----	--

공업	50				50	
----	----	--	--	--	----	--

별표 2의 소방령란, 소방위란, 소방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령	203	31		172		
-----	-----	----	--	-----	--	--

소방위	582	38		544		
-----	-----	----	--	-----	--	--

소방사	3,547	25		3,522		
-----	-------	----	--	-------	--	--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총정원 변동 없이 직렬·직급 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 및 필요분야 인력 재배치를 위해 직렬·직급 간 조정
-5급 +4명, 6급 +7명, 7급 △23명, 8급 +13명, 9급 △1명

나. 119안전센터 현장 인력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소방공무원 직급 조정
-소방령 +1명, 소방위 +34명, 소방사 △35명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649호

중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시정명령)하고, 이 사실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이사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6년 1월 1일
서울특별시장

1. 공고기간 : 2026. 1. 1. ~ 2026. 1. 15.(14일간)

2. 처분대상 및 내용

연 번	업 체 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내용	처분 근거
1	㈜엔에스씨건설 (박정웅)	건축공사업 01 - 5305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63길 12, 지하1층 비103-1호(대치동, 신농플라자)	2024년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법 제49조 제1항	시정명령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를 '26.1.16.(금)까지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6층)	법 제81조 제9호
2	㈜청보종합건설 (강용연)	건축공사업 01 - 3982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 210, 제2층 제5호 (명일동, 명일현대종합상가)	2024년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법 제49조 제1항	시정명령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를 '26.1.16.(금)까지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6층)	법 제81조 제9호
3	광야건설(주) (신정은)	건축공사업 01 - 5346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5길 24, 102호(일원동)	2024년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법 제49조 제1항	시정명령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를 '26.1.16.(금)까지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6층)	법 제81조 제9호

연 번	업 체 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내용	처분 근거
4	에이알지종합 건설주 (이철승)	건축공사업 01 - 3362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246, 502호 (개포동)	2024년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법 제49조 제1항	시정명령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를 '26.1.16.(금)까지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6층)	법 제81조 제9호
5	쥬작은도시 (최진호)	건축공사업 01 - 3821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98길 43, 지하1층 (암사동, 작은도시 노마드)	2024년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법 제49조 제1항	시정명령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를 '26.1.16.(금)까지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6층)	법 제81조 제9호

3.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담당관 ☎02)2133-8128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2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

2026년 1월 1일
서울특별시

구 분	현 행	관 련 법조문	위반시 처분 대상 및 내역
1. 운수종사자 장시간 운행방지	☐ 대 상 : 일반택시 ☐ 준수사항 ○ 운송사업자는 운전자의 장시간 운행에 따른 교통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1일 12시간 이상 승무하지 않도록 배차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12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이후 24시간 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배차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위반시 조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7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9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법 제23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또는 1차 : 120만원 2차 : 240만원 3차 : 360만원 - 사업일부정지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2. 운수종사자 실명제	☐ 대 상 : 일반택시 ☐ 준수사항 ○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차량을 배차시 통합형 디지털 운행기록계와 카드 결제단말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도록 해야 하며, 이상 시 승무를 시켜서는 안 된다. ○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영업시작 전 카드결제 단말기에 택시운전자격번호를 입력하도록 교육하여 운수종사자 자격관리시스템에서 택시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위반시 조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7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9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법 제23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또는 1차 : 120만원 2차 : 240만원 3차 : 360만원 - 사업일부정지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3. 택시운전 자격증명 반납	☐ 대 상 : 일반택시 ☐ 준수사항 ○ 운송사업자는 퇴직한 운수종사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퇴직한 날로부터 5일(퇴직일·토요일·일요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법 제23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또는

구 분	현 행	관 련 법조문	위반시 처분 대상 및 내역
	법인택시조합에 반납하여야 한다. ☐ 위반시 조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7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9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1차 : 120만원 2차 : 240만원 3차 : 360만원 － 사업일부정지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4. 택시 운송수입금 자료제출	☐ 대 상 : 택시 ☐ 준수사항 ○ 택시사업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근거하여 통합미터카드결제기(통합형이 아닌 경우 운행기록장치 및 택시미터기)에서 생성된 모든 운행정보와 운송수입금 정보를 서울택시정보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고급택시 및 대형승합택시를 운행하는 택시사업자는 1개월간 생성된 모든 운행정보와 운송수입금 정보를 원시데이터 상태로 익월 5일까지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위반시 조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7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9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법 제23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또는 1차 : 120만원 2차 : 240만원 3차 : 360만원 － 사업일부정지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5. GPS 기반 앱미터기 운영	☐ 대 상 : 택시 ☐ 준수사항 ○ 택시사업자는 GPS 기반 앱미터기를 의무적으로 택시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앱미터기는 자동차관리법상 어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제작검정을 받은 택시미터를 의미 － 앱미터기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통신규약을 준수 ○ 시속 120km/h 이상 주행 시 과속 경보음 발생 기능 탑재 ○ 앱미터기는 GPS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정비 후 운행을 개시하여야 한다. ○ 택시사업자는 통합미터결제기 운영 관련 서비스 기준(' 23.9월)에 따라 서울시에서 확인이 완료된 앱미터기를 사용해야 한다. － 필수서비스 기준 : 서울시 시계외할증 구현, 서울택시정보시스템 연계(정보제공), 카드결제기 및 RF 터치패드 장착, 운전기사	법 제23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또는 1차 : 120만원 2차 : 240만원 3차 : 360만원 － 사업일부정지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구 분	현 행	관 련 법조문	위반시 처분 대상 및 내역
	실명제(일반택시), QR결제 시스템, 안심이앱 안심귀가서비스 - 단, 배회영업에 사용하는 통합미터카드결제기에 한해 적용한다. ※ 통합미터결제기 운영 관련 서비스 기준이 통보된 23.9.14일 이후부터 적용하되, 서울시와 서비스기준 확인일정이 협의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위반시 조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7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9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6. 택시 카드결제기 장착 및 위치 설정	□ 대 상 : 택시 □ 준수사항 ○ 운송사업자는 택시요금 카드결제를 위한 카드결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카드단말기 위치는 택시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마그네틱 카드 및 IC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장비본체는 조수석 앞 왼쪽(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단, 조수석에 에어백이 설치된 경우에는 대시보드 상단 또는 센터 페시아 내에 장비본체 설치 - 선·후불교통카드 인식 터치패드(교통카드 리더기)는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 위에 고정 설치 ※ 다만, 고급택시 및 대형승합택시 등은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별도의 위치에 카드결제기를 설치하는 것도 인정한다. ○ 설치된 카드단말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정비 후 운행을 개시하여야 한다. □ 위반시 조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7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9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법 제23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또는 1차 : 120만원 2차 : 240만원 3차 : 360만원 - 사업일부정지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구 분	현 행	관 련 법조문	위반시 처분 대상 및 내역
7. 광고부착물 등의 택시운행 질서확립	☐ 대 상 : 택시 ☐ 준수사항 : 택시 내·외부 광고부착물 (공익성 홍보물 포함) ○ 택시내·외부 광고부착물은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택시광고사업 관리위원회 심의 후 부착하여야 한다. ☐ 위반시 조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7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9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법 제23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또는 1차 : 120만원 2차 : 240만원 3차 : 360만원 - 사업일부정지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8. 개인택시 부제운행	☐ 대 상 : 개인택시 (모범택시, 대형택시, 고급택시, 친환경택시 제외) ☐ 준수사항 ○ 수요 대응형 택시 및 장애인콜택시로 전환한 개인택시를 제외한 전체 개인택시를 4개조로 구분하여 개인택시조합의 조편성에 따라 가, 나, 다 조는 1일 단위로 1개조씩 운휴하고, 라조는 매주 수요일, 일요일과 월요일 오전반 (04~16시)에 휴무하는 조와 매주 수요일, 일요일과 목요일 오전반 (04~16시)에 휴무하는 조로 구분한다. - 운휴차량의 운행개시는 운휴일 익일 04:00부터로 한다. 단 라조는 월요일 목요일에는 16:00부터 운행을 개시한다. - 운행차량은 07:00~10:00, 19:00~24:00 시간대는 정상 운행 시간으로 하고 이외의 시간은 자율운행 시간으로 하되, 운전자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승인을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익일 운휴차량은 익일 운행차량이 운송을 개시할 때까지의 운행공백을 줄이기 위하여 익일 04:00까지 연장하여 운행할 수 있으며, 04:00 이전 탑승 승객에 한하여 목적지까지 운송할 수 있다. - 4개조 구분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지정한다. ○ 수요 대응형 택시 운행시간은 매일 21:00~익일 09:00까지 이며, 운행시간 중 21:00~익일 04:00 시간대는 정상 운행 시간으로 하고 이외의 시간은 자율운행시간으로 한다. - 휴무는 일요일 09:00부터 월요일 21:00까지로 한다. ○ 서울특별시장은 특정기간, 특정시간대 등 택시수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부제를 해제하거나, 의무운행 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 특정기간이라 함은 연말연시, 명절(설날, 추석), 대학입학시험일, 폭설,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파업과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규모 행사(국내, 국제) 개최 등을 말한다. - 매주 금요일 23시부터 익일 04시까지는 부제를 해제한다. - 택시수급 부족 시간대 택시공급 확대를 위하여 매달 의무적으로	법 제23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또는 1차 : 120만원 2차 : 240만원 3차 : 360만원 - 사업일부정지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구 분	현 행	관 련 법조문	위반시 처분 대상 및 내역
	운행해야 할 시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의무 운행 시간은 서울특별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단, 국토교통부 훈령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9조(택시부제) 단서의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 으로 지정(2022.11.22. 서울특별시-승차난 발생지역으로 지정)되어 부제가 해제된 경우에는 ‘개인택시 부제표시’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위반시 조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7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9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9. 개인택시 부제표시	□ 대 상 : 개인택시 (모범택시, 대형택시, 고급택시, 친환경택시 제외) □ 준수사항 ○ 외부표시 － 모 양 : 운휴조에 따라 각각     의 형태로 사각형 안에 「개인」, 운휴조, 조합명을 하나의 이미지로 표현하여, 운휴조별로 글씨는 흰색으로 하고 바탕 색상을 “가” 조는 파란색, “나” 조는 오렌지색, “다” 조는 초록색, “라” 조는 보라색(목)과 자주색(월), 수요일 대응형 택시 ” 9 “조는 검정색 바탕에 노란색글씨로 한다. 운휴조에 따라 각각  ,  ,  ,  ,  로 타원형(120mm×95mm)안에 운휴조, 고유발급 번호, 조합명을 표시하고 직인을 날인한 표지를 부착한다. ※ 가맹택시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모양을 달리 할 수 있음 － 규격 ○ 양 측 면 : 가로295mm × 세로90mm ○ 뒷 트렁크 : 가로200mm × 세로60mm ○ 뒷 유리창 : 가로120mm × 세로95mm － 부착위치 ○ 양 측 면 : 앞문 손잡이 상단선 기준으로 사이드미러와 손잡이 사이 중앙에 부착한다. ○ 뒷 트렁크 : 트렁크 쪽 번호판을 기준으로 번호판 바로 위 좌측에 부착한다 ○ 뒷 유리창 : 뒷 유리창 중앙에 외부에서 보이도록 부착한다. ○ 단, 측면광고부착시 개인택시 부제표시 부착위치 조정을	법 제17조	○ 운송사업자 － (1년에 3회 이상 위반시) 과징금 10만원 또는 운행정지 10일 － 과태료 1회 : 10만원 2회 : 15만원 3회 : 20만원

구 분	현 행	관 련 법조문	위반시 처분 대상 및 내역
	허용한다.(일반택시의 회사명, 관리번호 위치로 이전부착 허용) ※ 부제표시 방법 등을 지침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변조 표시 한 때, 파훼된 되었을 때에는 미부착으로 간주한다. 단, 퇴색된 표시증을 부착하거나 견고하게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 1차는 적발시 경고조치를 취하고 2차 적발시 미부착으로 간주한다. ※ 단, 국토교통부 훈령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9조(택시부제) 단서의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 으로 지정(2022.11.22. 서울특별시-승차난 발생지역으로 지정)되어 부제가 해제된 경우에는 ‘개인택시 부제표시’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위반시 조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17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0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6] 위반행위 ‘라’ 호에 의한 과태료 처분		
10. 택시운전 자격증명 등 게시	□ 대 상 : 택시 □ 준수사항 : 택시운전자격증명 등 게시 및 갱신 ○ 규 격 - 택시운전자격증명 : 가로 148mm × 세로 105mm ○ 부착위치 - 택시운전자격증명 : 조수석 앞 선반 위 (에어백 설치 차량의 경우 조수석 전방 유리창 우측 상단 모서리) ○ 위 부착물상의 사진과 글씨가 선명한 상태로 게시하여야 하며 퇴색·마멸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해당조합에서 즉시 갱신하여야 한다. ○ 위 택시운전자격증명(게시용) 등의 사진이나 글씨가 뒷좌석 에서 식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퇴색·마멸 또는 훼손된 상태로 부착된 경우 위 부착물 미부착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사회질서 및 공공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부착물 및 도시경관과 미풍양속을 해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착물과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부착물은 부착을 금지한다. ○ 부당 시계외 할증 적용 등을 숨기기 위해 고의적으로 택시 미터기 화면에 어떠한 부착물을 부착해서는 안 된다. □ 위반시 조치 ○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6호에 의한 운행 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8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법 제21조, 법 제26조	【택시운전자격증명】 ○ 운송사업자 - 과징금 10만원 또는 - 운행정지 5일 ○ 운수종사자 - 과태료 1회 : 10만원 2회 : 15만원 3회 : 20만원 【지정부착물】 ○ 운송사업자 - 과징금 또는 ○ 운수종사자 1차 : 20만원 2차 : 40만원 - 운행정지 1차 : 5일 2차 : 10일

구 분	현행	관련법조문	위반시 처분 대상 및 내역																																									
	○ 운수종사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2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6] 위반행위 목록에 의한 과태료 처분		- 과태료10만원																																									
11. 택시 외부표시	□ 대상 : 택시 □ 준수사항 : 택시표시등 및 빈차(예약)표시등 설치, 차량색상, 택시표시문자 ○ 택시표시등(방법등) 및 빈차(예약)표시등 설치 - 부착위치 : 택시표시등(실내등을 기준으로 루프 중앙) - 빈차표시등(앞 유리 중앙 상단) ※ 단, 대형택시 택시표시등은 차량 전면 중앙 상단도 허용 - 규격(택시표시등) : 가로400mm × 세로250mm × 높이140mm - 색 상 : 아래 표와 같다. <table><tr><td>구 분</td><td>앞/뒷면바탕색</td><td>앞/뒷면글자색</td><td>옆면/뒷면바탕색</td></tr><tr><td>일반택시</td><td>SCN017</td><td>한강은백색</td><td>꽃담황토색</td></tr><tr><td>개인택시</td><td>한강은백색</td><td>파란색/SCN019</td><td>꽃담황토색</td></tr></table> - 글 씨 : 아래 표와 같다. <table><tr><td>구 분</td><td>전면글자</td><td>후면글자</td><td>우측/좌측</td></tr><tr><td>일반법인</td><td>서울</td><td>TAXI</td><td rowspan="2">양쪽 CARD+ (해치), 카드불가시 양쪽 해치</td></tr><tr><td>개인택시</td><td>서울</td><td>TAXI</td></tr></table> - 모범 및 대형(승용) 등 색상 및 글씨 : 아래 표와 같다. <table><tr><td>구분</td><td>바탕색</td><td>글씨</td><td>전면글자</td><td>측면글자</td><td>후면글자</td></tr><tr><td>모범택시</td><td>황색</td><td>흑색</td><td>TAXI모범</td><td>개인</td><td>모범</td></tr><tr><td>대형택시 (승용)</td><td>황색</td><td>흑색</td><td>대형TAXI</td><td>법인(개인)</td><td>TAXI</td></tr></table> ※ 운송가맹사업 등은 서울특별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택시표시등, 빈차표시등은 미터기 작동시 점등/소등되도록 하여야 한다. - 예약표시는 예약시에만 점등되도록 해야 한다. - 택시표시등에 차량내부의 위급상황을 알리는 점멸장치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 모범운전자 택시표시등은 2010.4.16. 서울특별시장이 승인한	구 분	앞/뒷면바탕색	앞/뒷면글자색	옆면/뒷면바탕색	일반택시	SCN017	한강은백색	꽃담황토색	개인택시	한강은백색	파란색/SCN019	꽃담황토색	구 분	전면글자	후면글자	우측/좌측	일반법인	서울	TAXI	양쪽 CARD+ (해치), 카드불가시 양쪽 해치	개인택시	서울	TAXI	구분	바탕색	글씨	전면글자	측면글자	후면글자	모범택시	황색	흑색	TAXI모범	개인	모범	대형택시 (승용)	황색	흑색	대형TAXI	법인(개인)	TAXI	법 제17조	○ 운송사업자 - (1년에 3회 이상 위반시) 과징금 10만원 또는 운행정지 10일 - 과태료 1회 : 10만원 2회 : 15만원 3회 : 20만원
구 분	앞/뒷면바탕색	앞/뒷면글자색	옆면/뒷면바탕색																																									
일반택시	SCN017	한강은백색	꽃담황토색																																									
개인택시	한강은백색	파란색/SCN019	꽃담황토색																																									
구 분	전면글자	후면글자	우측/좌측																																									
일반법인	서울	TAXI	양쪽 CARD+ (해치), 카드불가시 양쪽 해치																																									
개인택시	서울	TAXI																																										
구분	바탕색	글씨	전면글자	측면글자	후면글자																																							
모범택시	황색	흑색	TAXI모범	개인	모범																																							
대형택시 (승용)	황색	흑색	대형TAXI	법인(개인)	TAXI																																							

구 분	현행	관련법조문	위반시 처분대상 및 내역								
	내용을 따른다. ○ 차량색상 - 중형택시(법인·개인) : 흰색(백옥색), 은색(은황색), 완전꽃담황토색, 회색(단, 회색은 모범·대형택시의 검은색과의 구분을 위해 짙색 등 어두운 회색은 해당하지 않음. ※ RGB 115이상 및 무채색 표 명도 11단계 중 명도 4.5이상 8.0이하에 해당) - 모범택시, 대형택시 : 검은색 - 고급택시, 대형승합택시, 협동조합택시, 전기택시, 운송가맹점 택시, 외국인관광택시 등의 색상은 서울특별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일반택시 외부표시 <table><tr><td>내 용</td><td>회사명 + 택시관리번호 3자리</td></tr><tr><td>규 격</td><td>□ 회사명(H60mm×W변화치수)/차량관리번호 (H50mm×W변화치수)</td></tr><tr><td>색상 및 서체</td><td>□ SC2105(서울색), 서울남산체 Extra Bold</td></tr><tr><td>표시위치</td><td>□ 양측면 : C-필러 부분의 뒤창 끝선에 맞추어 정렬 □ 후면 : 트렁크 뒤의 번호판 우측 상단</td></tr></table> ○ 개인택시 외부표시 (개인택시 부제 해제 시) - 모양 ○ 의 형태로 사각형 안에 「서울」 「개인」 「조합명」을 하나의 이미지로 표현하여, 글씨는 흰색으로 하고 바탕 색상을 파란색으로 한다. ※ 비조합원이 사용 가능한 외부표시는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교통-택시에 별도 안내 - 규격 ○ 양 측 면 : 가로295mm × 세로90mm ○ 뒷 트렁크 : 가로200mm × 세로60mm - 부착위치 ○ 양 측 면 : 앞문 손잡이 상단선 기준으로 사이드미러와 손잡이 사이 중앙에 부착한다. ○ 뒷 트렁크 : 트렁크 쪽 번호판을 기준으로 번호판 바로 위 좌측에 부착한다. ○ 기타 모범, 대형, 브랜드 택시 등의 표시문자는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사항을 따른다. ※ 택시의 문자표시, 해치로고, 브랜드엠블럼, 콜센터 전화번호 표시	내 용	회사명 + 택시관리번호 3자리	규 격	□ 회사명(H60mm×W변화치수)/차량관리번호 (H50mm×W변화치수)	색상 및 서체	□ SC2105(서울색), 서울남산체 Extra Bold	표시위치	□ 양측면 : C-필러 부분의 뒤창 끝선에 맞추어 정렬 □ 후면 : 트렁크 뒤의 번호판 우측 상단		
내 용	회사명 + 택시관리번호 3자리										
규 격	□ 회사명(H60mm×W변화치수)/차량관리번호 (H50mm×W변화치수)										
색상 및 서체	□ SC2105(서울색), 서울남산체 Extra Bold										
표시위치	□ 양측면 : C-필러 부분의 뒤창 끝선에 맞추어 정렬 □ 후면 : 트렁크 뒤의 번호판 우측 상단										

구 분	현 행	관 련 법조문	위반시 처분 대상 및 내역
	위치와 크기, 색채, 서체는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 표시방법 등을 지침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변조 표시 한때, 파훼·손·퇴색 되었거나 견고하게 부착되지 아니한 때에는 미부착으로 간주한다. ※ 단, 장애인콜택시로 전환한 개인택시, 고급택시, 대형승합택시, 협동조합택시 등은 서울특별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사회질서 및 공공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부착물 및 도시경관과 미풍양속을 해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착물과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부착물은 부착을 금지한다. □ 위반시 조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 적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17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0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6] 위반행위 '라' 호에 의한 과태료 처분		
12. 친절 운행 이행	□ 대 상 : 택시 □ 준수사항 ○ 택시에서 “불친절 행위”란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승객에게 반말, 욕설, 폭언, 성차별·성희롱 발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운송사업자는 소속 운수종사자에게 차량 배차시 승객에게 불친절 행위(영상기록장치 등을 통한 입증이 가능한 사항)를 하지 않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 지시된 사항은 문서로 기록·관리 ○ 운수종사자는 운송사업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위반시 조치 ○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7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9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 운수종사자 － 동법 시행령 제49조 [별표6] 위반행위 버목에 의한 과태료 처분	법 제23조, 법 제26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또는 1차 : 120만원 2차 : 240만원 3차 : 360만원 － 사업일부정지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 운수종사자 － 과태료10만원
13. 운수종사자 복장지정	□ 대 상 : 택시 □ 준수사항 ○ 택시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운행 전 점검하여야 하며, 금지복장을 착용한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법 제21조, 법 제26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10만원 또는 － 운행정지

구 분	현행	관련법조문	위반시 처분대상 및 내역												
	○ 운수종사자는 금지복장을 착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용모를 항상 단정하게 해야 한다. ○ 지정 복장이 있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택시 운행 시간에 착용토록 권고할 수 있다. 〈 택시 금지복장 〉 <table><tr><th>구 분</th><th>금 지 복 장</th></tr><tr><td>상 의</td><td> □ 풀티, 소매 없는 셔츠(민소매), 런닝셔츠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문구 등으로 디자인된 상의 □ 소매가 지나치게 넓어져 헨들 조작에 지장을 주는 옷 </td></tr><tr><td>하 의</td><td> □ 반바지, 철부바지, 운동복, 찢어진 형태로 디자인된 바지 등 </td></tr><tr><td>모 자</td><td> □ 승객이 운전자의 눈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가리는 모자 □ 낡은 모양 또는 혐오스럽게 디자인된 모자 </td></tr><tr><td>신 발</td><td> □ 발등과 발뒤꿈치를 조이지 않은 슬리퍼 등 신발류 □ 양말을 신지 않고 맨발로 운행하는 행위 □ 뒷굽이 높은 하이힐 등 브레이크, 엑셀러레이터 조작에 지장을 주는 신발 </td></tr><tr><td>기 타</td><td> □ 운전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행위(감염병 등 재난 및 위기상황별 국민행동요령에 따른 정부권고시 제외) </td></tr></table> □ 위반시 조치 ○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법제85조제1항제21호,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6호 더목에 의한 운행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8호 너목에 의한 과징금 ○ 운수종사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제9호, 법제94조제3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4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6] 위반행위 버목에 따른 과태료 처분	구 분	금 지 복 장	상 의	□ 풀티, 소매 없는 셔츠(민소매), 런닝셔츠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문구 등으로 디자인된 상의 □ 소매가 지나치게 넓어져 헨들 조작에 지장을 주는 옷	하 의	□ 반바지, 철부바지, 운동복, 찢어진 형태로 디자인된 바지 등	모 자	□ 승객이 운전자의 눈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가리는 모자 □ 낡은 모양 또는 혐오스럽게 디자인된 모자	신 발	□ 발등과 발뒤꿈치를 조이지 않은 슬리퍼 등 신발류 □ 양말을 신지 않고 맨발로 운행하는 행위 □ 뒷굽이 높은 하이힐 등 브레이크, 엑셀러레이터 조작에 지장을 주는 신발	기 타	□ 운전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행위(감염병 등 재난 및 위기상황별 국민행동요령에 따른 정부권고시 제외)		1차 : 3일 2차 : 5일 ○ 운수종사자 - 과태료10만원
구 분	금 지 복 장														
상 의	□ 풀티, 소매 없는 셔츠(민소매), 런닝셔츠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문구 등으로 디자인된 상의 □ 소매가 지나치게 넓어져 헨들 조작에 지장을 주는 옷														
하 의	□ 반바지, 철부바지, 운동복, 찢어진 형태로 디자인된 바지 등														
모 자	□ 승객이 운전자의 눈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가리는 모자 □ 낡은 모양 또는 혐오스럽게 디자인된 모자														
신 발	□ 발등과 발뒤꿈치를 조이지 않은 슬리퍼 등 신발류 □ 양말을 신지 않고 맨발로 운행하는 행위 □ 뒷굽이 높은 하이힐 등 브레이크, 엑셀러레이터 조작에 지장을 주는 신발														
기 타	□ 운전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행위(감염병 등 재난 및 위기상황별 국민행동요령에 따른 정부권고시 제외)														
14. 교육	□ 대 상 : 택시 □ 준수사항 ○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보수교육을 받을 때에 교육 당일 특별근로(공가처리) 등 교육의무를 다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운수종사자는 운송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법 제25조, 법 제26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또는 1차 : 30만원 2차 : 60만원 3차 : 90만원												

구 분	현 행	관 련 법조문	위반시 처분 대상 및 내역
	☐ 위반시 조치 ○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법 제85조 제1항 제23호, 법 제88조제1항 - 동법시행령 제43조 [별표3] 위반내용 제28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제46조 [별표5] 위반내용 제20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 운수종사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법 제26조 제1항 제9호, 법제94조 제3항제4호 적용 - 동법시행령 제49조 [별표6] 위반행위 버목에 따른 과태료 처분		- 사업일부정지 1차 : 5일 2차 : 10일 3차 : 15일 ○ 운수종사자 - 과태료 10만원
15. 법인택시 근로현황 공개	☐ 대 상 : 일반택시 ☐ 준수사항 ○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투명한 채용환경 조성을 위해 운송사업자는 서울특별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사이트를 통해 각종 급여(기본급, 수당 등), 근로조건 (소정근로시간 등), 복리후생 수준 등을 공개해야 한다. - 각종 급여에 부가세 경감세액 환급금은 포함하지 않고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야 한다. - 공개된 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항의 적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영토록 해야 한다. ☐ 위반시 조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7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9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법 제23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또는 1차 : 120만원 2차 : 240만원 3차 : 360만원 - 사업일부정지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16. 택시방역 강화	☐ 대 상 : 택시 ☐ 준수사항 ○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감염증 등의 유행시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1급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인 경우 승객 탑승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여야 한다. ☐ 위반시 조치 ○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7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법 제23조, 법 제26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또는 1차 : 120만원 2차 : 240만원 3차 : 360만원 - 사업일부정지

구 분	현 행	관 련 법조문	위반시 처분 대상 및 내역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9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 운수종사자가 규정 위반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운행개시 전 마스크를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운수사업자에 대한 처분은 면제한다. ○ 운수종사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적용 － 동법 시행령 제49조 [별표6] 위반행위 버목에 의한 과태료 처분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 운수종사자 － 과태료10만원
17. 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 대 상 : 택시 ☐ 준수사항 ○ 운송사업자는 승객의 폭행 등 위급상황시 택시 내부의 긴급상황을 외부에 신속히 알리기 위해 택시표시등에 위급상황을 알리는 점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위반시 조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7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9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법 제23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또는 1차 : 120만원 2차 : 240만원 3차 : 360만원 － 사업일부정지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부칙	☐ 시행일 ○ 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규칙]

◆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111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인
2026년 1월 1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7,927	6	1,800	1,492	4,629
정무직	정무직 계	1	-	1	-	-
	교육감	1	-	1	-	-
일반직	일반직 계	7,157	6	1,521	1,155	4,475
	2·3급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	-	1	-
	3급	부이사관	9	-	9	-
	3·4급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3	-	3	-
	4급	소계	44	-	33	11
		서기관	39	-	29	10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5	-	4	1
	4·5급	서기관 또는 교육행정사무관	7	-	7	-
	5급	소계	344	1	150	61
		교육행정	254	1	88	47
		행정	6	-	6	-
		사서	31	-	31	-
		보건	1	-	1	-
		교육행정 또는 행정	10	-	4	-
		교육행정 또는 사서	6	-	6	-
		교육행정 또는 보건	8	-	3	3
		교육행정 또는 시설	1	-	1	-
		공업 또는 시설	20	-	9	11
		교육행정·공업 또는 시설	6	-	-	-
		교육행정·보건 또는 식품위생	1	-	1	-
	6급	소계	2,066	5	522	334
		교육행정	1,341	5	230	204
		전산	58	-	30	28
		사서	130	-	119	11
		공업	14	-	12	-
		녹지	-	-	-	-
		보건	17	-	7	10
		식품위생	6	-	4	-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일반직		간호	5	-	5	-	-
		시설	41	-	18	23	-
		방송통신	-	-	-	-	-
		시설관리	305	-	42	11	252
		운전	4	-	2	-	2
		통신운영	1	-	1	-	-
		전기운영	10	-	4	-	6
	6급	열관리운영	21	-	11	-	10
		사무운영	59	-	22	12	25
		교육행정 또는 사무운영	3	-	3	-	-
		교육행정 또는 전산	-	-	-	-	-
		교육행정 또는 보건	1	-	-	-	1
		방호 또는 시설관리	3	-	3	-	-
		공업 또는 시설	30	-	4	26	-
		보건 또는 식품위생	3	-	3	-	-
		교육행정 · 공업 또는 시설	3	-	-	-	3
		교육행정 · 보건 또는 식품위생	11	-	2	9	-
	7급	소계	2,714	-	563	515	1,636
		교육행정	1,759	-	245	368	1,146
		전산	62	-	46	16	-
		사서	173	-	173	-	-
		공업	20	-	8	12	-
		녹지	-	-	-	-	-
		보건	30	-	16	14	-
		간호	5	-	5	-	-
		시설	45	-	18	27	-
		시설관리	514	-	24	15	475
		운전	12	-	3	6	3
		통신운영	1	-	1	-	-
		전기운영	-	-	-	-	-
		열관리운영	-	-	-	-	-
		사무운영	56	-	11	33	12
		교육행정 또는 사서	3	-	3	-	-
		교육행정 또는 시설	1	-	1	-	-
		교육행정 또는 사무운영	1	-	1	-	-
		공업 또는 시설	18	-	3	15	-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보건 또는 식품위생	-	-	-	-	-
		방호 또는 시설관리	4	-	2	2	-
		교육행정 · 보건 또는 식품위생	10	-	3	7	-
	8급	소계	1,948	-	223	223	1,502
		교육행정	1,257	-	65	119	1,073
		전산	22	-	11	11	-
		사서	84	-	84	-	-
		공업	13	-	1	12	-
		보건	21	-	4	17	-
		시설	49	-	7	42	-
		시설관리	475	-	43	6	426
		운전	9	-	1	5	3
		전기운영	-	-	-	-	-
일반직	8급	열관리운영	-	-	-	-	-
		사무운영	-	-	-	-	-
		교육행정 또는 사무운영	5	-	5	-	-
		교육행정 또는 보건	1	-	1	-	-
		공업 또는 시설	11	-	-	11	-
		보건 또는 간호	1	-	1	-	-
		방호 또는 시설관리	-	-	-	-	-
	9급	소계	-	-	-	-	-
		시설관리	-	-	-	-	-
		운전	-	-	-	-	-
		전기운영	-	-	-	-	-
		열관리운영	-	-	-	-	-
		사무운영	-	-	-	-	-
		방호 또는 시설관리	-	-	-	-	-
	전문 경력관	소계	7	-	7	-	-
		가군	1	-	1	-	-
		비상계획관	1	-	1	-	-
		나군	2	-	2	-	-
		교육영상물제작PD	1	-	1	-	-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평생교육사	-	-	-	-	-
		학생수련지도사	1	-	1	-	-
		다군	4	-	4	-	-
		속기사	-	-	-	-	-
		학생수련지도사	4	-	4	-	-
	연구사	소계	14	-	3	11	-
		학예연구	1	-	1	-	-
		기록연구	13	-	2	11	-
일반직	별정직 계		8	-	8	-	-
	4급 상당(비서)		1	-	1	-	-
	5급 상당(비서)		4	-	4	-	-
	6급 상당(비서)		3	-	3	-	-
전문직	특정직 계		761	-	270	337	154
	장학관 · 교육 연구관	소계	129	-	69	60	-
		3급 상당	17	-	6	11	-
		4급 상당	34	-	23	11	-
		5급 상당	78	-	40	38	-
	장학사 · 교육 연구사		632	-	201	277	154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2026년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른 국가정책수요 조기 반영
- 나. 일반직공무원 정·현원 불일치 해소를 위한 정원 조정
- 다.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에 따른 정원 조정
- 라.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단위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 조정

2. 주요내용

가. 일반직공무원 단위기관별 정원 조정

- 본청(직속기관 포함)
: 6급 (감)3명, 7급 (증)5명, 8급 (증)4명, 계 (증)6명
- 교육지원청
: 6급 (증)1명, 8급 (증)1명, 계 (증)2명
- 각급학교
: 5급 (증)1명, 6급 (증)18명, 7급 (감)1명, 8급 (감)26명, 계 (감)8명

나. 일반직공무원 직렬별·직급별 정원 조정

- 5급: 교육행정 5급 (증)2명, 교육행정 또는 시설 5급 (감)1명, 계 (증)1명
- 6급: 교육행정 6급 (증)16명, 방송통신 6급 (감)1명, 시설관리 6급 (증)1명, 계 (증)16명
- 7급: 교육행정 7급 (증)18명, 시설관리 7급 (증)1명, 사무운영 7급 (감)15명, 계 (증)4명
- 8급: 교육행정 8급 (증)2명, 운전 8급 (감)1명, 시설관리 8급 (감)21명, 사무운영 8급 (감)1명, 계 (감)21명

구 고 시

◆ 동작구고시 제2026-1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연장 및 해제, 지형도면 고시

동작구 노량진동 46번지 일대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을 연장 및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1일

동 작 구 청 장

1. 제한지역

- 가. (기정) 위 치 : 동작구 노량진동 46번지 일대, 면적 184,807㎡
- 나. (변경) 위 치 : 동작구 노량진동 46번지 일대, 면적 87,123㎡

2. 제한사유

- 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방향과 상충하는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실현성 제고를 위함
- 나. 무질서한 개발 억제와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으로 도시기능 증진 및 합리적인 개발 유도를 도모하고자 함

3. 제한기간 : 2026. 1. 1. ~ 2026. 12. 31.

- ※ 단, 제한기간 중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거나, 타 법에 의해 동일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가능할 경우 그 고시일까지로 함

4. 제한행위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또는 공작물의 설치(단, 용도변경 및 내부 대수선은 제외))
 - 토지의 형질 변경
 - 토석의 채취
 -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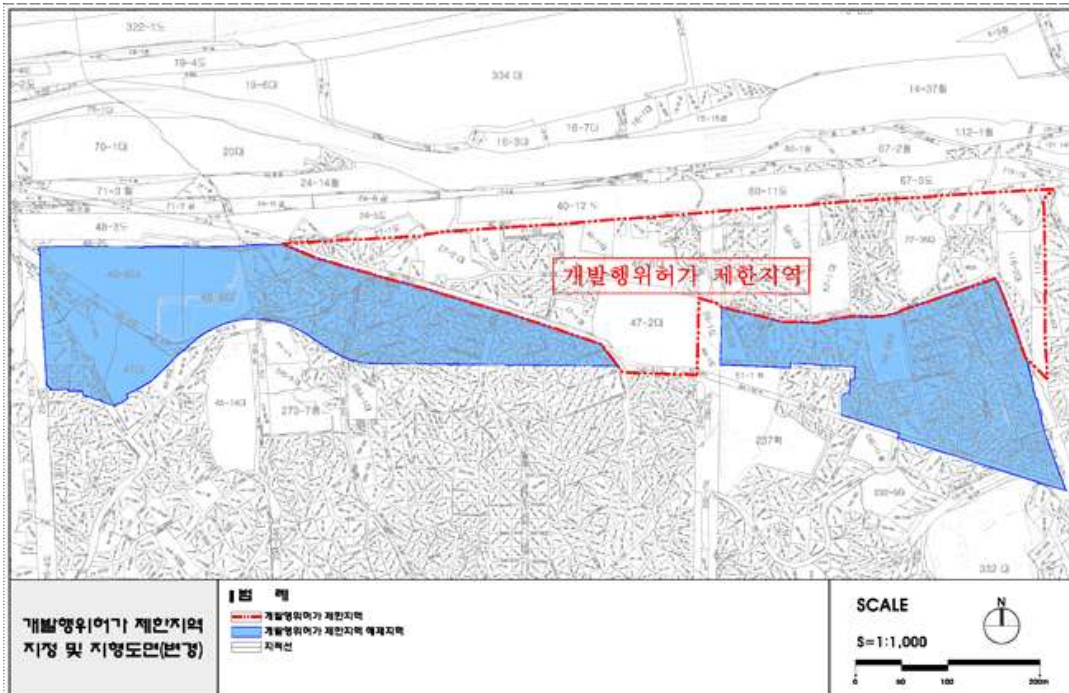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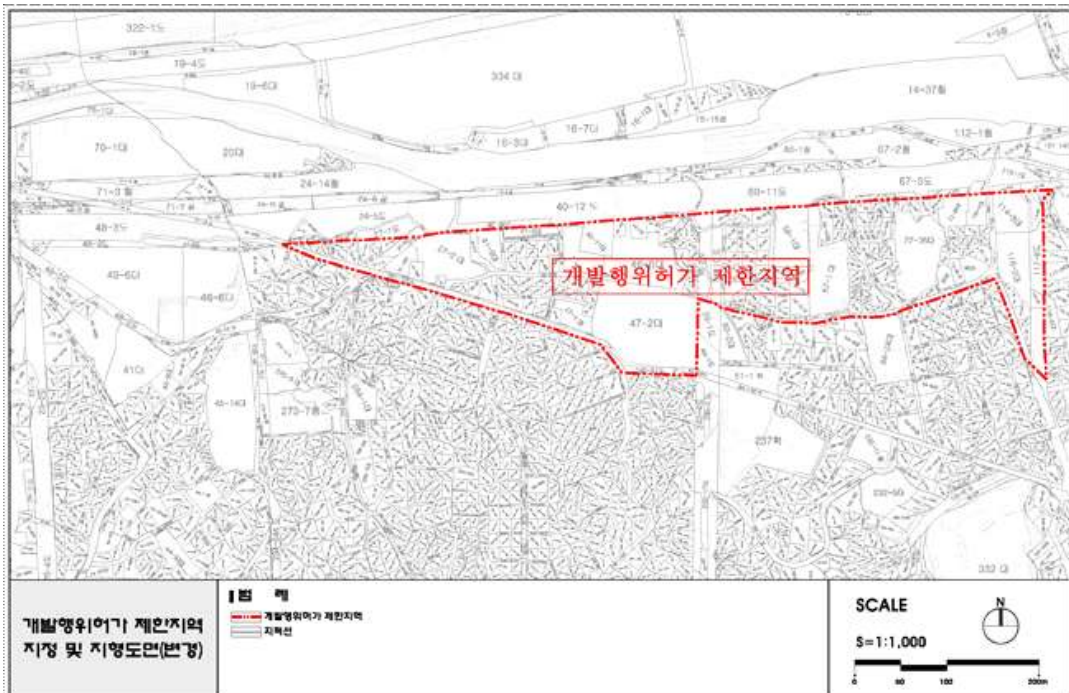
5. 제한 예외대상

- 기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등 적법한 규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신고)를 받아 진행 중인 사업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안전보강을 위한 건축 및 대수선
- 제한 대상에도 불구하고, 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구단위계획 수립 목적 실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6. 관계도서 : 생략 (동작구청 도시계획과 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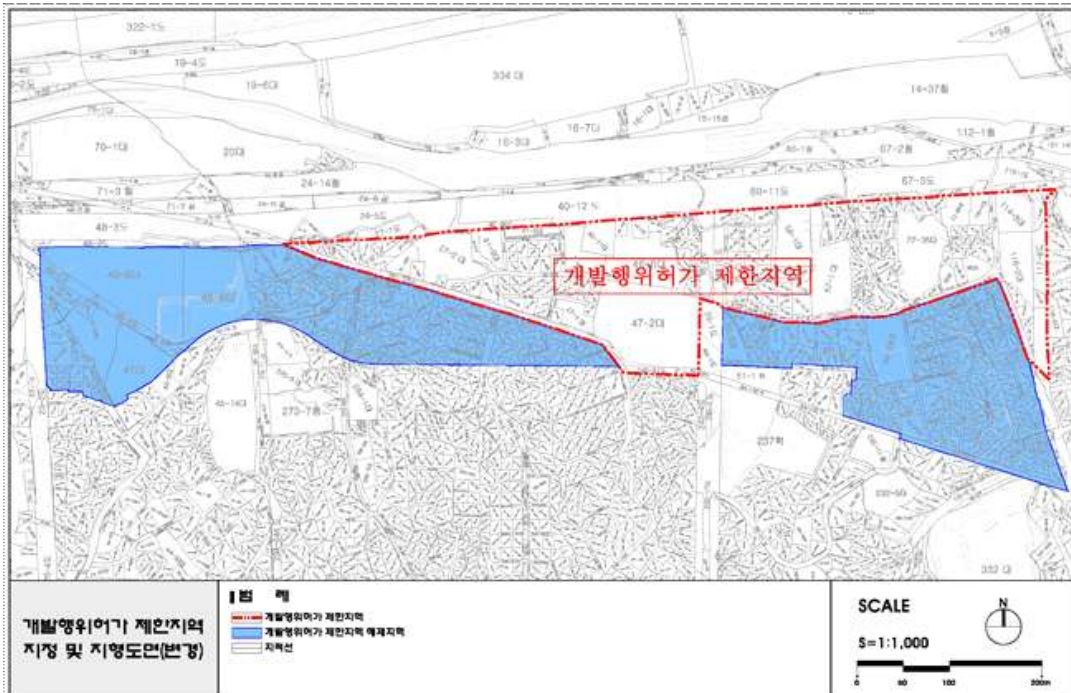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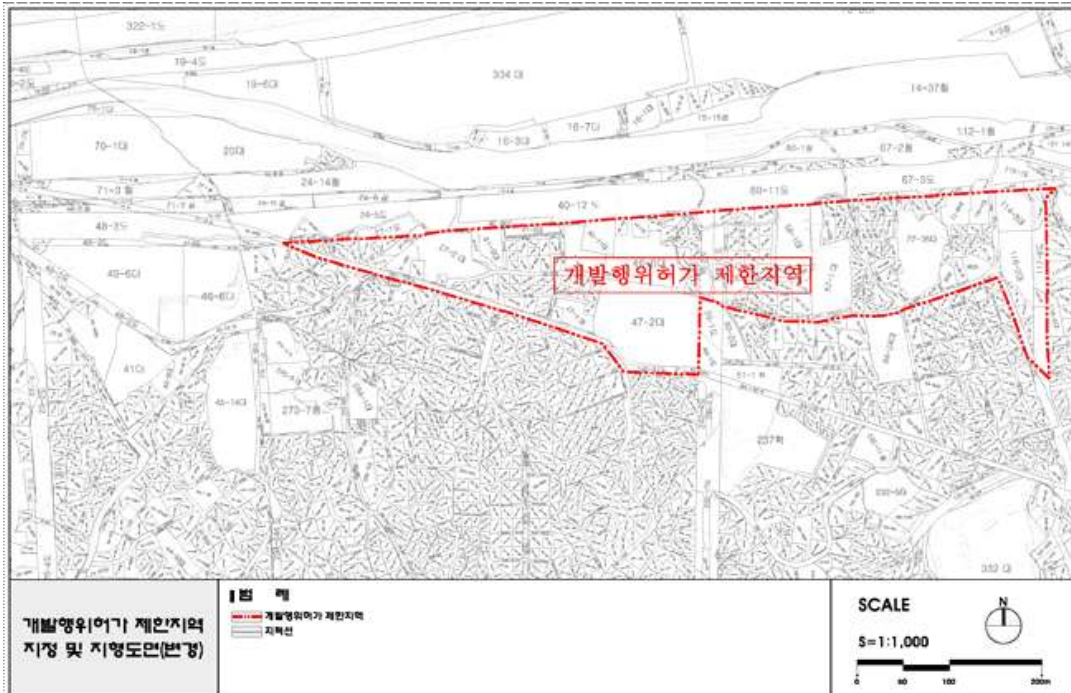
7. 기타사항 : 도면 열람 및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도시계획과(☎820-19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 형 도 면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 형 도 면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대상 토지(기정구역)

연번	위치	면적(㎡)	지목
1	노량진동 72-57	128	대
2	노량진동 72-34	7	대
3	노량진동 72-47	82	대
4	노량진동 43-5	4	대
5	노량진동 59-44	10	대
6	노량진동 43-7	1	대
7	노량진동 63-9	75	도로
8	노량진동 45-1	3	도로
9	노량진동 42-11	1,221	대
10	노량진동 40-14	1,538	대
11	노량진동 72-8	109	대
12	노량진동 59-41	33	대
13	노량진동 41-27	16	대
14	노량진동 40-100	12	대
15	노량진동 40-81	12	대
16	노량진동 24-66	7	대
17	노량진동 40-74	11	대
18	노량진동 72-10	71	대
19	노량진동 40-69	10	대
20	노량진동 27-17	7	대
21	노량진동 84-93	4	대
22	노량진동 32-2	26	도로
23	노량진동 29-8	77	대
24	노량진동 29-5	33	대
25	노량진동 28-8	175	대
26	노량진동 54-6	225	대
27	노량진동 40-40	3	대
28	노량진동 72-46	71	대
29	노량진동 95	607	대
30	노량진동 58-9	76	대
31	노량진동 40-38	199	대

연번	위치	면적(㎡)	지목
32	노량진동 56-26	197	대
33	노량진동 45-17	63	대
34	노량진동 39-34	126	대
35	노량진동 36-2	2	도로
36	노량진동 39-5	160	대
37	노량진동 58-21	58	대
38	노량진동 45-14	92	대
39	노량진동 31-31	11	도로
40	노량진동 31-23	15	도로
41	노량진동 118-4	247	도로
42	노량진동 39-11	165	대
43	노량진동 58-7	91	대
44	노량진동 54-34	52	도로
45	노량진동 119-237	2	대
46	노량진동 119-166	101	대
47	노량진동 119-205	23	대
48	노량진동 49-11	3	도로
49	노량진동 240-87	11	도로
50	노량진동 56-42	32	대
51	노량진동 44-22	3	도로
52	노량진동 100-2	114	대
53	노량진동 40-73	13	대
54	노량진동 40-66	10	대
55	노량진동 28-7	136	대
56	노량진동 27-16	81	대
57	노량진동 39-25	122	대
58	노량진동 244-82	1	대
59	노량진동 40-3	26	도로
60	노량진동 40-32	220	대
61	노량진동 44-34	22	대
62	노량진동 45-41	8	도로
63	노량진동 45-35	4	도로

연번	위치	면적(㎡)	지목
64	노량진동 31-2	253	도로
65	노량진동 45-10	72	대
66	노량진동 45-45	17	도로
67	노량진동 45-43	7	도로
68	노량진동 45-42	1	도로
69	노량진동 55-6	3	대
70	노량진동 72-76	24	대
71	노량진동 82-1	46	도로
72	노량진동 54-36	46	도로
73	노량진동 37-16	15	대
74	노량진동 114-3	213	도로
75	노량진동 114-8	376	도로
76	노량진동 114-17	162	대
77	노량진동 113-8	104	도로
78	노량진동 75-2	121	대
79	노량진동 73-1	179	대
80	노량진동 73-3	226	대
81	노량진동 70-15	221	대
82	노량진동 70-20	7	대
83	노량진동 70-19	8	대
84	노량진동 70-27	2	대
85	노량진동 70-10	1	대
86	노량진동 62-19	22	대
87	노량진동 72-18	104	대
88	노량진동 71-2	204	대
89	노량진동 71-1	138	도로
90	노량진동 71-4	76	대
91	노량진동 72-3	139	대
92	노량진동 70-16	30	대
93	노량진동 72-17	61	도로
94	노량진동 59-29	154	대
95	노량진동 59-30	193	대

연번	위치	면적(㎡)	지목
96	노량진동 72-61	6	대
97	노량진동 56-1	2,509	대
98	노량진동 72-51	10	대
99	노량진동 72-22	10	대
100	노량진동 71-5	202	대
101	노량진동 59-43	8	도로
102	노량진동 59-8	94	철도용지
103	노량진동 44-23	4	대
104	노량진동 70-28	48	대
105	노량진동 59-33	23	대
106	노량진동 59-9	117	대
107	노량진동 72-16	258	대
108	노량진동 59-10	402	대
109	노량진동 43-6	18	대
110	노량진동 44-14	5	도로
111	노량진동 43-16	9	대
112	노량진동 42-14	243	대
113	노량진동 59-46	30	도로
114	노량진동 56-20	167	대
115	노량진동 72-24	120	대
116	노량진동 72-7	89	대
117	노량진동 72-25	104	대
118	노량진동 71-6	148	대
119	노량진동 40-21	93	대
120	노량진동 41-5	506	대
121	노량진동 59-32	116	대
122	노량진동 59-35	84	대
123	노량진동 40-16	11	대
124	노량진동 59-42	9	도로
125	노량진동 41-4	44	대
126	노량진동 43-17	4	대
127	노량진동 26-6	12	도로

연번	위치	면적(㎡)	지목
128	노량진동 116-2	2,248	대
129	노량진동 59-4	5	도로
130	노량진동 40-80	12	대
131	노량진동 40-79	13	대
132	노량진동 100-3	82	대
133	노량진동 40-76	13	대
134	노량진동 40-75	13	대
135	노량진동 45-29	62	대
136	노량진동 100-6	51	대
137	노량진동 100-7	68	대
138	노량진동 40-72	12	대
139	노량진동 72-50	123	대
140	노량진동 40-42	51	도로
141	노량진동 56-23	211	대
142	노량진동 40-68	11	대
143	노량진동 40-67	10	대
144	노량진동 27-10	198	대
145	노량진동 58-38	10	도로
146	노량진동 27-12	94	대
147	노량진동 72-11	82	대
148	노량진동 27-11	259	대
149	노량진동 45-5	142	대
150	노량진동 45-27	9	대
151	노량진동 54-5	212	대
152	노량진동 28-6	145	대
153	노량진동 40-30	210	대
154	노량진동 72-49	27	대
155	노량진동 40-43	97	대
156	노량진동 40-46	221	대
157	노량진동 29-7	108	대
158	노량진동 100-19	10	도로
159	노량진동 58-39	205	대

연번	위치	면적(㎡)	지목
160	노량진동 72-45	122	대
161	노량진동 40-20	124	대
162	노량진동 97-1	274	대
163	노량진동 58-8	67	대
164	노량진동 45-24	2	대
165	노량진동 84-110	5	대
166	노량진동 27-13	33	대
167	노량진동 29-6	70	대
168	노량진동 72-12	75	대
169	노량진동 100-8	94	대
170	노량진동 45-9	127	대
171	노량진동 28-10	135	대
172	노량진동 81	148	대
173	노량진동 40-34	135	대
174	노량진동 72-43	61	대
175	노량진동 115-2	80	도로
176	노량진동 31-3	111	대
177	노량진동 40-39	220	대
178	노량진동 40-45	190	대
179	노량진동 72-30	256	대
180	노량진동 58-10	144	대
181	노량진동 39-38	907	도로
182	노량진동 72-56	87	대
183	노량진동 40-35	132	대
184	노량진동 72-32	126	임야
185	노량진동 58-41	72	도로
186	노량진동 72-58	37	대
187	노량진동 31-24	116	도로
188	노량진동 56-8	212	대
189	노량진동 72-31	247	대
190	노량진동 116-3	30	대
191	노량진동 58-20	117	대

연번	위치	면적(㎡)	지목
192	노량진동 40-97	16	도로
193	노량진동 92-1	75	도로
194	노량진동 31-13	118	대
195	노량진동 40-98	2	도로
196	노량진동 39-7	250	도로
197	노량진동 39-1	137	대
198	노량진동 58-12	97	대
199	노량진동 56-11	299	대
200	노량진동 39-3	157	대
201	노량진동 36-5	215	대
202	노량진동 47-2	9,080	대
203	노량진동 72-33	151	대
204	노량진동 91-1	98	대
205	노량진동 56-33	215	대
206	노량진동 56-17	186	대
207	노량진동 56-12	176	대
208	노량진동 35-1	96	대
209	노량진동 85-1	48	대
210	노량진동 35-2	80	대
211	노량진동 39-33	118	대
212	노량진동 72-37	23	대
213	노량진동 58-13	19	대
214	노량진동 39-32	124	대
215	노량진동 45-31	121	대
216	노량진동 72-38	147	대
217	노량진동 58-14	50	대
218	노량진동 39-20	116	대
219	노량진동 39-18	120	대
220	노량진동 58-27	285	대
221	노량진동 45-15	40	대
222	노량진동 35-3	110	도로
223	노량진동 58-15	31	대

연번	위치	면적(㎡)	지목
224	노량진동 58-16	48	대
225	노량진동 56-16	222	대
226	노량진동 39-16	162	도로
227	노량진동 58-25	39	대
228	노량진동 58-17	73	대
229	노량진동 56-13	192	대
230	노량진동 39-26	215	대
231	노량진동 58-26	64	대
232	노량진동 54-21	135	대
233	노량진동 58-29	157	대
234	노량진동 58-32	96	대
235	노량진동 39-12	164	대
236	노량진동 54-31	12	도로
237	노량진동 54-32	50	도로
238	노량진동 54-22	130	대
239	노량진동 58-28	99	대
240	노량진동 54-23	182	대
241	노량진동 54-33	59	도로
242	노량진동 37-9	43	대
243	노량진동 119-64	177	대
244	노량진동 119-193	6	대
245	노량진동 240-81	499	도로
246	노량진동 240-79	76	도로
247	노량진동 240-88	1	대
248	노량진동 58-24	63	대
249	노량진동 45-3	136	대
250	노량진동 45-7	60	대
251	노량진동 45-8	163	대
252	노량진동 72-68	321	대
253	노량진동 72-52	211	대
254	노량진동 40-28	182	대
255	노량진동 40-110	28	대

연번	위치	면적(㎡)	지목
256	노량진동 56-19	601	도로
257	노량진동 41-30	59	대
258	노량진동 41-29	4	도로
259	노량진동 36-3	347	대
260	노량진동 36-10	7	대
261	노량진동 37-1	904	대
262	노량진동 90-8	247	대
263	노량진동 114-5	1,597	대
264	노량진동 114-10	350	도로
265	노량진동 72-48	1,048	대
266	노량진동 72-23	100	대
267	노량진동 44-12	223	대
268	노량진동 59-34	109	대
269	노량진동 42-7	381	대
270	노량진동 46-6	3,996	대
271	노량진동 100-4	156	대
272	노량진동 63-10	5	대
273	노량진동 72-26	107	대
274	노량진동 54-1	212	대
275	노량진동 40-71	11	대
276	노량진동 40-70	11	대
277	노량진동 58-2	62	대
278	노량진동 40-47	124	도로
279	노량진동 45-33	37	도로
280	노량진동 58-1	74	대
281	노량진동 40-33	130	대
282	노량진동 29-11	55	대
283	노량진동 31-15	662	대
284	노량진동 72-13	178	대
285	노량진동 40-52	103	대
286	노량진동 31-18	291	대
287	노량진동 54-9	196	대

연번	위치	면적(㎡)	지목
288	노량진동 56-9	349	대
289	노량진동 58-11	106	대
290	노량진동 45-13	38	대
291	노량진동 39-30	138	대
292	노량진동 39-6	119	대
293	노량진동 39-4	167	대
294	노량진동 39-21	124	대
295	노량진동 39-23	149	대
296	노량진동 39-8	120	대
297	노량진동 39-9	118	대
298	노량진동 90-1	189	대
299	노량진동 58-36	130	대
300	노량진동 39-10	112	대
301	노량진동 85-34	20	대
302	노량진동 39-27	271	대
303	노량진동 37-8	171	대
304	노량진동 54-35	38	도로
305	노량진동 72-28	75	대
306	노량진동 62-20	13	도로
307	노량진동 40-78	10	대
308	노량진동 27-3	17	도로
309	노량진동 72-44	17	대
310	노량진동 100-20	1	대
311	노량진동 56-24	213	대
312	노량진동 85-5	21	대
313	노량진동 45-28	183	도로
314	노량진동 62-12	68	도로
315	노량진동 44-11	224	대
316	노량진동 45-34	57	도로
317	노량진동 45-30	31	대
318	노량진동 55-4	10	대
319	노량진동 55-2	914	도로

연번	위치	면적(㎡)	지목
320	노량진동 45-36	1	대
321	노량진동 54-8	248	대
322	노량진동 45-6	117	대
323	노량진동 45-12	123	대
324	노량진동 45-11	40	대
325	노량진동 45-48	6	도로
326	노량진동 45-47	3	도로
327	노량진동 45-46	23	도로
328	노량진동 45-44	1	도로
329	노량진동 62-26	167	대
330	노량진동 72-53	29	대
331	노량진동 72-75	65	대
332	노량진동 72-35	4,136	대
333	노량진동 72-77	5	도로
334	노량진동 82	386	대
335	노량진동 41-9	930	대
336	노량진동 40-31	142	대
337	노량진동 41-31	4	대
338	노량진동 56-14	463	대
339	노량진동 34-6	427	도로
340	노량진동 56-41	122	도로
341	노량진동 62-8	395	대
342	노량진동 54-20	113	대
343	노량진동 54-11	520	대
344	노량진동 57-7	97	도로
345	노량진동 56-43	29	도로
346	노량진동 57-1	3,789	대
347	노량진동 54-37	83	도로
348	노량진동 54-38	20	도로
349	노량진동 40-96	66	대
350	노량진동 40-112	2	대
351	노량진동 39-39	366	구거

연번	위치	면적(㎡)	지목
352	노량진동 37-17	2	대
353	노량진동 37-18	18	대
354	노량진동 54-10	883	도로
355	노량진동 44-16	254	대
356	노량진동 54-13	215	도로
357	노량진동 58-19	411	대
358	노량진동 58-42	40	대
359	노량진동 100-1	712	대
360	노량진동 100-23	99	도로
361	노량진동 62-7	201	대
362	노량진동 62-11	104	대
363	노량진동 54-4	174	대
364	노량진동 54-39	163	대
365	노량진동 54-3	183	대
366	노량진동 54-7	197	대
367	노량진동 54-17	163	대
368	노량진동 39-17	156	대
369	노량진동 39-41	17	도로
370	노량진동 37-11	121	대
371	노량진동 37-20	21	도로
372	노량진동 37-19	15	도로
373	노량진동 284-55	5	도로
374	노량진동 261-13	18	도로
375	노량진동 264-14	1	대
376	노량진동 264-15	8	도로
377	노량진동 264-18	2	대
378	노량진동 83-7	1	대
379	노량진동 84-100	2	대
380	노량진동 118-14	1,056	도로
381	노량진동 60-11	284	도로
382	노량진동 63-12	277	도로
383	노량진동 27-5	342	도로

연번	위치	면적(㎡)	지목
384	노량진동 28-2	12	도로
385	노량진동 261-16	2,099	수도용지
386	노량진동 29-20	45	도로
387	노량진동 28-11	62	도로
388	노량진동 29-3	17	대
389	노량진동 29-10	30	대
390	노량진동 27-2	2,991	대
391	노량진동 264-19	18	도로
392	노량진동 117-25	1	도로
393	노량진동 258-43	53	도로
394	노량진동 85-10	18	대
395	노량진동 83-1	7	대
396	노량진동 258-6	2	잡종지
397	노량진동 83-2	0	대
398	노량진동 255-22	1	도로
399	노량진동 84-2	1	도로
400	노량진동 84-101	36	대
401	노량진동 246-79	177	구거
402	노량진동 244-72	4	대
403	노량진동 29-12	2	대
404	노량진동 84-102	143	도로
405	노량진동 62-29	255	도로
406	노량진동 84-98	1,370	도로
407	노량진동 90-2	573	도로
408	노량진동 117-8	1,131	도로
409	노량진동 70-13	7	도로
410	노량진동 40-12	2	도로
411	노량진동 44-6	32	도로
412	노량진동 44-32	16	도로
413	노량진동 84-109	106	수도용지
414	노량진동 284-45	4	도로
	계	87,123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토지(준치관리구역)

연번	위치	면적(㎡)	지목
1	노량진동 267-13	167	대
2	노량진동 267-14	46	대
3	노량진동 266-26	168	대
4	노량진동 264-12	3	대
5	노량진동 263-1	5	도로
6	노량진동 263-15	9	도로
7	노량진동 266-11	14	도로
8	노량진동 266-23	48	대
9	노량진동 271-1	25	도로
10	노량진동 84-103	2	대
11	노량진동 284-47	4	도로
12	노량진동 85-12	164	대
13	노량진동 258-40	130	대
14	노량진동 85-39	2	대
15	노량진동 262-2	16	도로
16	노량진동 260-1	143	대
17	노량진동 256-1	123	대
18	노량진동 86-4	169	대
19	노량진동 260-6	114	대
20	노량진동 258-33	147	대
21	노량진동 83-9	170	대
22	노량진동 258-51	8	대
23	노량진동 258-32	126	대
24	노량진동 119-15	95	대
25	노량진동 259-6	21	대
26	노량진동 52-21	59	대
27	노량진동 244-65	113	대
28	노량진동 119-128	28	도로
29	노량진동 244-1	81	도로
30	노량진동 271-8	36	대
31	노량진동 244-66	129	대

연번	위치	면적(㎡)	지목
32	노량진동 119-107	47	대
33	노량진동 256-49	7	답
34	노량진동 52-48	290	대
35	노량진동 276-3	147	대
36	노량진동 52-14	209	대
37	노량진동 256-44	100	대
38	노량진동 276-2	10	대
39	노량진동 256-13	102	대
40	노량진동 256-11	72	전
41	노량진동 52-30	171	대
42	노량진동 258-27	11	잡종지
43	노량진동 255-1	26	대
44	노량진동 275-13	7	도로
45	노량진동 119-134	182	대
46	노량진동 119-79	211	대
47	노량진동 84-43	202	대
48	노량진동 119-51	91	대
49	노량진동 84-27	458	대
50	노량진동 84-77	186	대
51	노량진동 84-47	156	대
52	노량진동 119-40	112	대
53	노량진동 119-39	179	대
54	노량진동 119-261	162	대
55	노량진동 84-90	165	대
56	노량진동 84-118	146	대
57	노량진동 84-35	635	대
58	노량진동 84-74	124	대
59	노량진동 119-87	139	대
60	노량진동 121-2	4	도로
61	노량진동 120-24	12	대
62	노량진동 120-12	60	대
63	노량진동 120-17	96	대

연번	위치	면적(㎡)	지목
64	노량진동 121-4	5	도로
65	노량진동 120-9	99	대
66	노량진동 87-4	14	대
67	노량진동 119-249	8	전
68	노량진동 266-32	11	도로
69	노량진동 265-3	44	대
70	노량진동 264-5	65	대
71	노량진동 89-1	167	대
72	노량진동 259-13	156	대
73	노량진동 269	36	도로
74	노량진동 258-34	146	대
75	노량진동 263-12	22	도로
76	노량진동 256-61	139	대
77	노량진동 244-50	207	대
78	노량진동 276-4	156	대
79	노량진동 256-9	124	대
80	노량진동 276-1	26	대
81	노량진동 84-15	69	도로
82	노량진동 119-84	140	대
83	노량진동 119-54	143	대
84	노량진동 119-89	50	대
85	노량진동 119-118	232	대
86	노량진동 119-256	14	대
87	노량진동 119-232	15	대
88	노량진동 263-9	76	대
89	노량진동 83-8	69	대
90	노량진동 90-14	4	대
91	노량진동 119-44	157	대
92	노량진동 276-5	13	대
93	노량진동 84-133	10	도로
94	노량진동 53-5	17	도로
95	노량진동 122-65	2	대

연번	위치	면적(㎡)	지목
96	노량진동 84-81	58	대
97	노량진동 119-90	8	대
98	노량진동 119-16	80	대
99	노량진동 119-267	2	대
100	노량진동 267-68	27	대
101	노량진동 267-69	0	대
102	노량진동 267-50	42	도로
103	노량진동 267-12	163	대
104	노량진동 267-51	10	도로
105	노량진동 266-30	274	도로
106	노량진동 266-9	273	대
107	노량진동 265-1	112	대
108	노량진동 266-8	133	대
109	노량진동 267-31	151	대
110	노량진동 264-1	88	도로
111	노량진동 266-27	119	대
112	노량진동 266-6	147	대
113	노량진동 264-13	10	도로
114	노량진동 264-8	25	대
115	노량진동 264-7	63	대
116	노량진동 266-2	249	도로
117	노량진동 267-41	88	대
118	노량진동 266-28	106	대
119	노량진동 92-2	142	대
120	노량진동 264-3	23	대
121	노량진동 267-53	111	도로
122	노량진동 264-2	56	대
123	노량진동 267-37	170	대
124	노량진동 267-36	149	대
125	노량진동 267-7	508	대
126	노량진동 263-6	143	대
127	노량진동 267-19	183	대

연번	위치	면적(㎡)	지목
128	노량진동 266-29	167	대
129	노량진동 261-4	335	대
130	노량진동 85-43	68	도로
131	노량진동 89-9	74	대
132	노량진동 85-37	337	대
133	노량진동 261-8	221	대
134	노량진동 284-57	27	도로
135	노량진동 266-3	11	대
136	노량진동 261-2	233	대
137	노량진동 85-44	3	도로
138	노량진동 85-42	88	도로
139	노량진동 267-28	240	대
140	노량진동 85-6	147	대
141	노량진동 267-48	195	대
142	노량진동 267-21	179	대
143	노량진동 267-67	620	도로
144	노량진동 271-22	21	도로
145	노량진동 259-1	139	대
146	노량진동 263-11	195	대
147	노량진동 89-4	23	대
148	노량진동 85-40	99	대
149	노량진동 271-2	39	대
150	노량진동 267-10	95	대
151	노량진동 262-1	18	대
152	노량진동 267-60	20	도로
153	노량진동 263-4	114	대
154	노량진동 85-13	53	대
155	노량진동 259-2	138	대
156	노량진동 261-11	141	대
157	노량진동 271-25	135	대
158	노량진동 258-42	222	대
159	노량진동 89-2	267	대

연번	위치	면적(㎡)	지목
160	노량진동 267-26	76	대
161	노량진동 85-14	151	대
162	노량진동 87-14	101	대
163	노량진동 259-10	47	대
164	노량진동 262-3	232	대
165	노량진동 263-13	36	도로
166	노량진동 263-3	99	대
167	노량진동 53-3	380	대
168	노량진동 89-6	7	대
169	노량진동 284-63	7	대
170	노량진동 87-13	23	도로
171	노량진동 258-35	131	대
172	노량진동 258-31	144	대
173	노량진동 284-64	20	도로
174	노량진동 267-63	1	도로
175	노량진동 86-2	15	대
176	노량진동 259-3	91	대
177	노량진동 262-4	182	대
178	노량진동 267-58	4	도로
179	노량진동 84-24	2,963	대
180	노량진동 257-2	126	대
181	노량진동 259-7	107	대
182	노량진동 87-15	83	대
183	노량진동 85-18	27	대
184	노량진동 85-24	140	대
185	노량진동 87-16	67	도로
186	노량진동 260-2	245	대
187	노량진동 53-1	88	대
188	노량진동 257-1	165	대
189	노량진동 256-16	106	대
190	노량진동 244-80	108	대
191	노량진동 258-37	146	대

연번	위치	면적(㎡)	지목
192	노량진동 85-23	232	대
193	노량진동 263-5	138	대
194	노량진동 260-5	143	대
195	노량진동 244-81	124	대
196	노량진동 258-22	220	대
197	노량진동 83-10	340	대
198	노량진동 262-6	15	도로
199	노량진동 52-5	376	대
200	노량진동 258-3	118	대
201	노량진동 87-10	58	대
202	노량진동 53-7	201	대
203	노량진동 277-2	175	대
204	노량진동 86-5	149	대
205	노량진동 258-38	125	대
206	노량진동 84-105	29	대
207	노량진동 85-25	151	대
208	노량진동 119-58	46	대
209	노량진동 244-67	87	대
210	노량진동 258-18	165	대
211	노량진동 119-126	11	대
212	노량진동 85-22	168	대
213	노량진동 53-4	148	대
214	노량진동 52-27	9	대
215	노량진동 52-1	30	대
216	노량진동 83-12	193	대
217	노량진동 84-5	541	대
218	노량진동 258-28	25	잡종지
219	노량진동 255-12	111	대
220	노량진동 260-3	106	대
221	노량진동 256-60	173	대
222	노량진동 244-78	164	대
223	노량진동 271-9	176	대

연번	위치	면적(㎡)	지목
224	노량진동 85-7	58	대
225	노량진동 85-26	68	대
226	노량진동 256-2	120	대
227	노량진동 258-12	139	대
228	노량진동 244-69	109	대
229	노량진동 52-40	379	대
230	노량진동 119-104	175	대
231	노량진동 258-21	66	잡종지
232	노량진동 52-34	73	대
233	노량진동 277-7	103	대
234	노량진동 119-110	216	대
235	노량진동 256-10	145	대
236	노량진동 258-11	126	대
237	노량진동 244-55	168	대
238	노량진동 119-129	12	대
239	노량진동 276-15	108	대
240	노량진동 256-50	172	대
241	노량진동 83-13	113	대
242	노량진동 85-28	70	대
243	노량진동 119-109	161	대
244	노량진동 52-49	340	대
245	노량진동 277-6	17	대
246	노량진동 255-2	146	대
247	노량진동 256-5	190	대
248	노량진동 83-14	161	대
249	노량진동 52-13	238	대
250	노량진동 255-18	36	대
251	노량진동 258-24	114	대
252	노량진동 119-21	248	대
253	노량진동 84-69	101	대
254	노량진동 119-111	370	대
255	노량진동 271-23	12	대

연번	위치	면적(㎡)	지목
256	노량진동 119-4	104	대
257	노량진동 83-15	164	대
258	노량진동 258-8	53	잡종지
259	노량진동 244-59	151	대
260	노량진동 52-39	168	대
261	노량진동 244-74	23	대
262	노량진동 256-14	139	대
263	노량진동 275-2	128	대
264	노량진동 244-64	22	도로
265	노량진동 244-56	163	대
266	노량진동 84-129	288	대
267	노량진동 52-33	80	대
268	노량진동 119-112	238	대
269	노량진동 119-23	124	대
270	노량진동 255-7	102	대
271	노량진동 276-14	31	대
272	노량진동 258-16	16	잡종지
273	노량진동 85-32	64	대
274	노량진동 256-39	16	답
275	노량진동 258-17	7	대
276	노량진동 119-25	64	대
277	노량진동 84-51	117	대
278	노량진동 119-100	159	대
279	노량진동 119-70	75	대
280	노량진동 49-12	61	도로
281	노량진동 84-58	9	도로
282	노량진동 50-6	92	도로
283	노량진동 119-133	56	대
284	노량진동 119-183	71	대
285	노량진동 119-102	14	대
286	노량진동 90-13	13	대
287	노량진동 119-68	262	대

연번	위치	면적(㎡)	지목
288	노량진동 119-59	198	대
289	노량진동 84-92	143	대
290	노량진동 84-6	140	대
291	노량진동 119-210	21	대
292	노량진동 119-35	99	대
293	노량진동 119-211	13	대
294	노량진동 119-49	95	대
295	노량진동 119-47	302	도로
296	노량진동 84-33	190	대
297	노량진동 119-50	130	대
298	노량진동 119-241	193	대
299	노량진동 84-46	3	대
300	노량진동 119-72	154	대
301	노량진동 84-87	109	대
302	노량진동 119-38	100	대
303	노량진동 84-88	18	대
304	노량진동 119-233	8	도로
305	노량진동 119-37	161	대
306	노량진동 119-83	186	대
307	노량진동 119-240	7	도로
308	노량진동 119-52	149	대
309	노량진동 119-61	176	대
310	노량진동 119-73	137	대
311	노량진동 84-82	106	대
312	노량진동 84-115	175	대
313	노량진동 84-114	172	대
314	노량진동 119-53	126	대
315	노량진동 119-74	171	대
316	노량진동 84-113	169	대
317	노량진동 119-247	11	도로
318	노량진동 119-248	23	전
319	노량진동 84-34	177	대

연번	위치	면적(㎡)	지목
320	노량진동 119-82	1	대
321	노량진동 119-62	345	대
322	노량진동 84-116	131	도로
323	노량진동 119-41	119	대
324	노량진동 119-75	143	대
325	노량진동 119-31	145	대
326	노량진동 119-67	186	대
327	노량진동 119-137	5	대
328	노량진동 84-120	148	대
329	노량진동 84-119	50	도로
330	노량진동 119-56	149	대
331	노량진동 119-195	108	대
332	노량진동 119-113	124	대
333	노량진동 119-94	189	대
334	노량진동 119-91	1	대
335	노량진동 120-22	79	대
336	노량진동 119-260	6	도로
337	노량진동 120-13	102	대
338	노량진동 121-1	42	대
339	노량진동 119-46	239	대
340	노량진동 120	56	대
341	노량진동 120-26	119	대
342	노량진동 119-225	86	대
343	노량진동 120-14	40	대
344	노량진동 120-2	80	대
345	노량진동 120-15	183	대
346	노량진동 120-20	128	대
347	노량진동 120-3	89	대
348	노량진동 120-16	145	대
349	노량진동 120-10	102	대
350	노량진동 120-8	142	대
351	노량진동 120-6	260	대

연번	위치	면적(㎡)	지목
352	노량진동 120-7	197	도로
353	노량진동 261-5	109	대
354	노량진동 261-3	253	대
355	노량진동 271-27	206	도로
356	노량진동 84-121	152	대
357	노량진동 84-122	149	대
358	노량진동 119-36	193	대
359	노량진동 119-32	120	대
360	노량진동 89-8	133	대
361	노량진동 87-5	5	대
362	노량진동 119-251	8	전
363	노량진동 119-250	32	전
364	노량진동 261-7	132	도로
365	노량진동 261-18	7	도로
366	노량진동 267-6	743	대
367	노량진동 267-42	77	대
368	노량진동 266-4	525	대
369	노량진동 284-33	5	대
370	노량진동 261-10	35	대
371	노량진동 91-4	11	대
372	노량진동 267-22	152	대
373	노량진동 268	66	도로
374	노량진동 259-12	124	대
375	노량진동 271-4	169	대
376	노량진동 50-2	996	대
377	노량진동 271-5	76	대
378	노량진동 85-15	176	대
379	노량진동 271-11	320	대
380	노량진동 267-59	16	도로
381	노량진동 257-3	84	대
382	노량진동 284-31	82	도로
383	노량진동 85-19	158	대

연번	위치	면적(㎡)	지목
384	노량진동 53-6	87	대
385	노량진동 271-13	191	대
386	노량진동 271-7	162	대
387	노량진동 53-8	4	대
388	노량진동 119-127	94	대
389	노량진동 84-106	2	대
390	노량진동 87-6	14	대
391	노량진동 258-20	143	대
392	노량진동 119-18	191	대
393	노량진동 258-19	197	대
394	노량진동 85-30	130	대
395	노량진동 275-1	125	대
396	노량진동 52-36	58	대
397	노량진동 244-71	143	대
398	노량진동 258-10	121	대
399	노량진동 244-79	174	대
400	노량진동 52-35	75	대
401	노량진동 244-70	149	대
402	노량진동 258-26	5	잡종지
403	노량진동 84-68	254	대
404	노량진동 244-75	34	도로
405	노량진동 119-131	13	대
406	노량진동 119-71	105	대
407	노량진동 119-212	40	대
408	노량진동 244-73	16	대
409	노량진동 276-12	10	대
410	노량진동 256-43	8	대
411	노량진동 90-12	7	대
412	노량진동 119-209	76	대
413	노량진동 84-131	16	도로
414	노량진동 119-29	15	대
415	노량진동 84-39	463	대

연번	위치	면적(㎡)	지목
416	노량진동 84-44	145	대
417	노량진동 84-86	201	대
418	노량진동 84-76	126	대
419	노량진동 84-49	46	대
420	노량진동 84-7	278	대
421	노량진동 119-63	39	전
422	노량진동 119-85	167	대
423	노량진동 84-117	100	대
424	노량진동 119-86	136	대
425	노량진동 119-55	100	대
426	노량진동 84-128	130	대
427	노량진동 84-123	124	대
428	노량진동 119-43	179	대
429	노량진동 119-92	11	대
430	노량진동 119-45	138	대
431	노량진동 119-114	172	대
432	노량진동 119-200	31	대
433	노량진동 120-25	117	대
434	노량진동 119-11	284	대
435	노량진동 120-32	41	대
436	노량진동 263-14	14	도로
437	노량진동 262-5	203	대
438	노량진동 267-49	88	대
439	노량진동 259-5	11	대
440	노량진동 277-8	94	대
441	노량진동 119-130	178	대
442	노량진동 258-23	40	잡종지
443	노량진동 84-28	159	대
444	노량진동 84-48	114	대
445	노량진동 119-204	12	대
446	노량진동 120-11	51	대
447	노량진동 266-25	223	대

연번	위치	면적(㎡)	지목
448	노량진동 271-16	129	대
449	노량진동 271-32	21	대
450	노량진동 271-30	21	도로
451	노량진동 276-13	89	대
452	노량진동 84-134	7	도로
453	노량진동 52-26	476	대
454	노량진동 120-21	91	대
455	노량진동 84-13	68	대
456	노량진동 84-52	231	대
457	노량진동 52-7	307	대
458	노량진동 277-5	149	대
459	노량진동 263-16	7	도로
460	노량진동 86-3	204	대
461	노량진동 52-4	458	대
462	노량진동 84-18	0	대
463	노량진동 84-137	27	대
464	노량진동 84-139	4	대
465	노량진동 84-26	7	대
466	노량진동 84-138	47	대
467	노량진동 119-77	200	도로
468	노량진동 119-69	184	도로
469	노량진동 119-266	9	대
470	노량진동 119-101	7	대
471	노량진동 267-1	52	도로
472	노량진동 267-2	2	도로
473	노량진동 267-72	0	도로
474	노량진동 267-70	35	대
475	노량진동 267-71	5	대
476	노량진동 264-10	21	대
477	노량진동 270-2	33	대
478	노량진동 270-5	68	도로
479	노량진동 270-7	40	도로

연번	위치	면적(㎡)	지목
480	노량진동 278-5	70	대
481	노량진동 276-6	107	대
482	노량진동 276-10	3	대
483	노량진동 278-4	20	대
484	노량진동 278-6	11	대
485	노량진동 276-7	93	대
486	노량진동 275-3	8	도로
487	노량진동 275-18	87	도로
488	노량진동 272-5	30	대
489	노량진동 270	163	대
490	노량진동 271-10	165	대
491	노량진동 271-15	28	대
492	노량진동 271-34	71	대
493	노량진동 272-23	1	대
494	노량진동 275-14	1	대
495	노량진동 276-16	96	대
496	노량진동 276-25	1	대
497	노량진동 276-26	6	대
498	노량진동 276-20	11	대
499	노량진동 51	18	학교용지
500	노량진동 52-9	217	도로
501	노량진동 52-3	131	도로
502	노량진동 52-56	65	도로
503	노량진동 84-11	205	대
504	노량진동 284-46	12	도로
505	노량진동 284-45	586	도로
506	노량진동 266-14	95	대
507	노량진동 271-12	171	대
508	노량진동 271-38	11	대
509	대방동 54-15	18	대
510	대방동 23-172	30	잡종지
511	대방동 23-53	118	대

연번	위치	면적(㎡)	지목
512	대방동 23-134	102	대
513	대방동 50-7	569	대
514	대방동 39-8	221	대
515	대방동 41-2	20	도로
516	대방동 41-1	4	도로
517	대방동 39-11	294	대
518	대방동 46-19	79	대
519	대방동 23-148	15	잡종지
520	대방동 32-1	156	대
521	대방동 42-1	31	도로
522	대방동 43-10	4	대
523	대방동 43-21	302	도로
524	대방동 23-193	198	대
525	대방동 23-59	29	잡종지
526	대방동 49-6	9,556	대
527	대방동 47-15	72	도로
528	대방동 49-3	249	대
529	대방동 39-16	224	도로
530	대방동 40-8	151	대
531	대방동 40-7	17	대
532	대방동 23-165	256	도로
533	대방동 42-3	16	도로
534	대방동 23-170	4	도로
535	대방동 23-147	770	대
536	대방동 23-171	100	도로
537	대방동 41-3	6	도로
538	대방동 23-54	157	대
539	대방동 23-67	45	도로
540	대방동 23-16	245	대
541	대방동 23-133	116	대
542	대방동 46-6	5,890	대
543	대방동 50-9	97	도로

연번	위치	면적(㎡)	지목
544	대방동 40-2	208	대
545	대방동 54-19	7	도로
546	대방동 23-168	68	도로
547	대방동 23-131	138	대
548	대방동 40-1	12	도로
549	대방동 68-87	26	대
550	대방동 68-86	38	도로
551	대방동 23-166	2,546	대
552	대방동 23	473	대
553	대방동 46-2	697	도로
554	대방동 23-55	134	대
555	대방동 68-54	159	구거
556	대방동 45-38	183	도로
557	대방동 45-51	147	도로
558	대방동 41	3,546	대
559	대방동 23-28	294	대
560	노량진동 41-4	23	도로
561	노량진동 256-17	53	대
562	노량진동 244-53	50	대
563	노량진동 256-53	106	대
564	노량진동 264-19	7	도로
565	노량진동 258-43	25	도로
566	노량진동 258-6	107	잡종지
567	노량진동 255-22	355	도로
568	노량진동 244-49	243	도로
569	노량진동 246-79	17	구거
570	노량진동 244-72	238	대
571	노량진동 244-60	146	대
572	노량진동 256-12	138	대
573	노량진동 255-6	34	도로
574	노량진동 258-13	111	대
575	노량진동 256-7	114	대

연번	위치	면적(㎡)	지목
576	노량진동 278-1	113	대
577	노량진동 244-54	133	대
578	노량진동 256-41	93	대
579	노량진동 254-1	59	대
580	노량진동 258-15	17	잡종지
581	노량진동 244-12	62	대
582	노량진동 244-58	41	대
583	노량진동 258-4	16	대
584	노량진동 255-3	14	대
585	노량진동 256-29	6	대
586	노량진동 244-52	3	대
587	노량진동 244-29	4	대
588	노량진동 256-51	115	대
589	노량진동 255-16	91	대
590	노량진동 278-3	20	대
591	노량진동 255-8	54	대
592	노량진동 256-3	1	대
593	노량진동 258-25	187	대
594	노량진동 267-52	105	도로
595	노량진동 267	43	도로
596	대방동 50-5	49	도로
597	대방동 49-2	786	도로
598	노량진동 83-7	171	대
599	노량진동 84-100	408	대
600	노량진동 85-10	214	대
601	노량진동 83-1	185	대
602	노량진동 83-2	34	대
603	노량진동 84-2	523	도로
604	노량진동 84-101	259	대
605	노량진동 84-102	3	도로
606	노량진동 84-98	176	도로
607	노량진동 90-2	355	도로

연번	위치	면적(㎡)	지목
608	노량진동 118-14	80	도로
609	노량진동 332-7	1	도로
610	노량진동 84-141	985	수도용지
	계	97,684	

◆ 동작구고시 제2026-2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연장 및 해제, 지형도면 고시

동작구 상도동 363번지 일대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을 연장 및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1일

동 작 구 청 장

1. 제한지역

가. (기정) 위 치 : 동작구 상도동 363번지 일대, 면적 89,656㎡

나. (변경) 위 치 : 동작구 상도동 363번지 일대, 면적 74,013㎡

2. 제한사유

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방향과 상충하는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실현성 제고를 위함

나. 무질서한 개발 억제와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으로 도시기능 증진 및 합리적인 개발 유도를 도모하고자 함

3. 제한기간 : 2026. 1. 1. ~ 2026. 12. 31.

※ 단, 제한기간 중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거나, 타 법에 의해 동일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가능할 경우 그 고시일까지로 함

4. 제한행위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또는 공작물의 설치(단, 용도변경 및 내부 대수선은 제외))
- 토지의 형질 변경
- 토석의 채취
-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5. 제한 예외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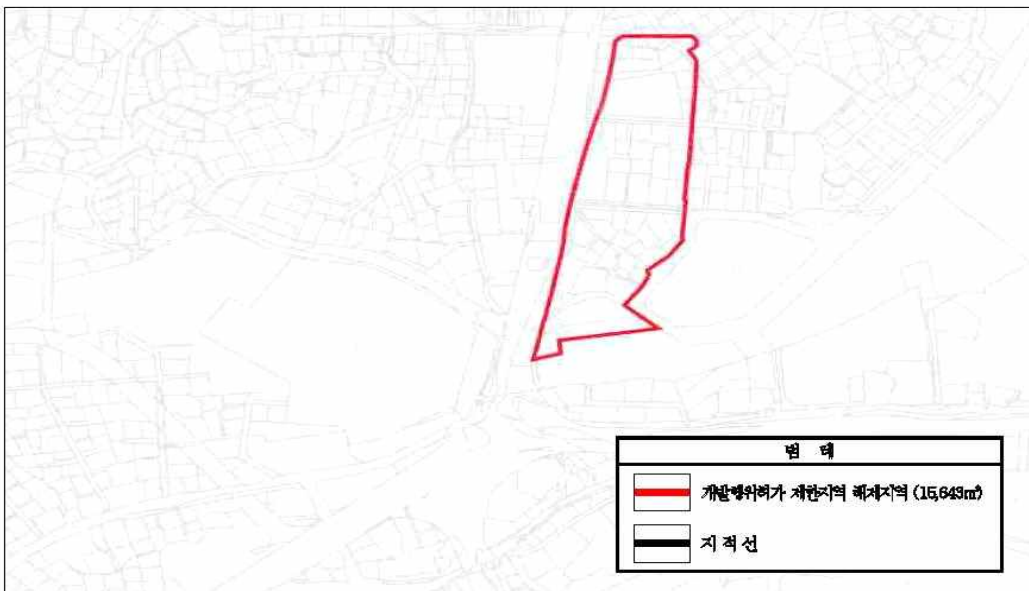
- 기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등 적법한 규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신고)를 받아 진행 중인 사업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안전보강을 위한 건축 및 대수선

- 제한 대상에도 불구하고, 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구단위계획 수립 목적 실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6. 관계도서 : 생략 (동작구청 도시계획과 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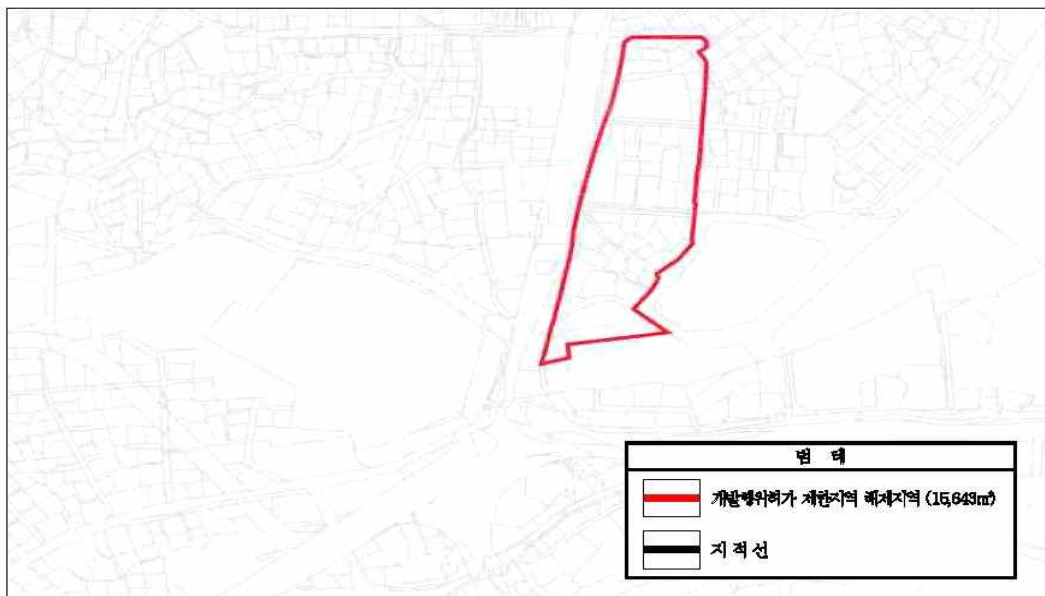
7. 기타사항 : 도면 열람 및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도시계획과(☎820-19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 형 도 면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 형 도 면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대상 토지(기정구역)

연번	위치	면적(㎡)	지목
1	상도동 900-5	11079.5	공
2	상도동 364-36	122	구
3	상도동 373-67	304	구
4	상도동 373-73	26	구
5	상도동 373-114	5	구
6	상도동 373-115	75	구
7	상도동 373-116	302	구
8	상도동 176-2	82	답
9	상도동 366-26	17	답
10	상도동 366-31	23	답
11	상도동 367-1	73	답
12	상도동 367-7	119	답
13	상도동 367-8	96	답
14	상도동 170-8	10	대
15	상도동 170-12	58	대
16	상도동 170-33	80	대
17	상도동 170-36	1	대
18	상도동 175-2	351	대
19	상도동 175-4	733	대
20	상도동 175-5	1925	대
21	상도동 175-8	499	대
22	상도동 175-9	195	대
23	상도동 175-16	18	대
24	상도동 176-1	3282	대
25	상도동 176-3	2889	대
26	상도동 176-6	8	대
27	상도동 177-6	68	대
28	상도동 177-8	5	대
29	상도동 177-12	23	대
30	상도동 178-3	21	대
31	상도동 178-5	44	대

연번	위치	면적(m ²)	지목
32	상도동 178-6	23	대
33	상도동 178-7	22	대
34	상도동 178-8	29	대
35	상도동 179-2	116	대
36	상도동 179-4	562	대
37	상도동 179-5	376	대
38	상도동 179-7	106	대
39	상도동 179-8	73	대
40	상도동 179-9	83	대
41	상도동 179-10	58	대
42	상도동 179-11	75	대
43	상도동 179-12	76	대
44	상도동 179-14	39	대
45	상도동 179-15	174	대
46	상도동 179-18	104	대
47	상도동 179-19	31	대
48	상도동 179-21	121	대
49	상도동 179-25	2	대
50	상도동 179-29	226	대
51	상도동 179-31	27	대
52	상도동 179-32	26	대
53	상도동 179-33	46	대
54	상도동 179-34	17	대
55	상도동 179-35	5	대
56	상도동 179-36	11	대
57	상도동 179-37	15	대
58	상도동 179-38	7	대
59	상도동 179-39	34	대
60	상도동 179-40	68	대
61	상도동 179-41	15	대
62	상도동 179-42	44	대
63	상도동 179-43	51	대

연번	위치	면적(㎡)	지목
64	상도동 179-44	15	대
65	상도동 180-2	155	대
66	상도동 181-1	123	대
67	상도동 181-2	527	대
68	상도동 181-6	122	대
69	상도동 181-7	10	대
70	상도동 181-8	106	대
71	상도동 181-9	230	대
72	상도동 181-13	110	대
73	상도동 181-15	138	대
74	상도동 181-17	152	대
75	상도동 181-20	75	대
76	상도동 181-23	5	대
77	상도동 181-55	53	대
78	상도동 181-56	9	대
79	상도동 181-57	32	대
80	상도동 181-58	14	대
81	상도동 181-59	53	대
82	상도동 181-60	35	대
83	상도동 181-61	20	대
84	상도동 181-64	31	대
85	상도동 181-65	9	대
86	상도동 181-66	54	대
87	상도동 183-1	149	대
88	상도동 183-5	119	대
89	상도동 183-7	205	대
90	상도동 183-12	185	대
91	상도동 183-13	264	대
92	상도동 183-28	258	대
93	상도동 183-29	246	대
94	상도동 183-31	185	대
95	상도동 183-32	179	대

연번	위치	면적(m ²)	지목
96	상도동 183-33	370	대
97	상도동 183-44	3	대
98	상도동 183-51	165	대
99	상도동 183-60	172	대
100	상도동 183-61	204	대
101	상도동 363	86	대
102	상도동 363-5	387	대
103	상도동 363-9	152	대
104	상도동 363-10	328	대
105	상도동 363-87	8	대
106	상도동 363-88	223	대
107	상도동 363-92	165	대
108	상도동 363-94	222	대
109	상도동 363-116	218	대
110	상도동 363-117	218	대
111	상도동 363-125	152	대
112	상도동 363-135	310	대
113	상도동 363-142	1021	대
114	상도동 363-143	235	대
115	상도동 363-152	30	대
116	상도동 363-164	1876	대
117	상도동 363-168	172	대
118	상도동 363-169	172	대
119	상도동 363-180	87	대
120	상도동 363-190	185	대
121	상도동 363-205	19	대
122	상도동 363-228	2	대
123	상도동 363-231	7	대
124	상도동 363-235	261	대
125	상도동 363-243	676	대
126	상도동 363-268	120	대
127	상도동 363-273	240	대

연번	위치	면적(m ²)	지목
128	상도동 363-303	113	대
129	상도동 364-1	299	대
130	상도동 364-23	36	대
131	상도동 365-1	969	대
132	상도동 365-2	152	대
133	상도동 365-4	553	대
134	상도동 365-6	56	대
135	상도동 365-9	162	대
136	상도동 365-11	268	대
137	상도동 365-18	192	대
138	상도동 365-23	93	대
139	상도동 365-33	56	대
140	상도동 366-22	472	대
141	상도동 366-24	56	대
142	상도동 366-29	3	대
143	상도동 366-38	123	대
144	상도동 366-41	18	대
145	상도동 367-4	228	대
146	상도동 367-6	814	대
147	상도동 367-11	3	대
148	상도동 367-12	36	대
149	상도동 368-5	131	대
150	상도동 368-6	1	대
151	상도동 368-8	57	대
152	상도동 368-10	132	대
153	상도동 368-11	97	대
154	상도동 368-12	1	대
155	상도동 368-14	290	대
156	상도동 368-19	730	대
157	상도동 368-22	6	대
158	상도동 368-24	10	대
159	상도동 368-25	1	대

연번	위치	면적(m ²)	지목
160	상도동 368-26	3	대
161	상도동 368-27	13	대
162	상도동 368-29	7	대
163	상도동 368-31	2	대
164	상도동 368-40	819	대
165	상도동 368-50	391	대
166	상도동 368-62	23	대
167	상도동 368-64	1	대
168	상도동 368-65	1	대
169	상도동 368-66	1	대
170	상도동 368-67	1	대
171	상도동 369-2	50	대
172	상도동 369-6	178	대
173	상도동 369-11	4	대
174	상도동 369-13	94	대
175	상도동 369-16	4	대
176	상도동 369-17	5	대
177	상도동 370-2	301	대
178	상도동 370-12	385	대
179	상도동 370-14	68	대
180	상도동 370-27	186	대
181	상도동 372-1	240	대
182	상도동 372-4	79	대
183	상도동 372-6	2	대
184	상도동 372-9	6	대
185	상도동 373-1	334	대
186	상도동 373-11	63	대
187	상도동 373-13	40	대
188	상도동 373-17	76	대
189	상도동 373-20	143	대
190	상도동 373-23	10	대
191	상도동 373-25	102	대

연번	위치	면적(m ²)	지목
192	상도동 373-30	13	대
193	상도동 373-31	27	대
194	상도동 373-32	2	대
195	상도동 373-33	1	대
196	상도동 373-34	396	대
197	상도동 373-45	13	대
198	상도동 373-52	297	대
199	상도동 373-55	239	대
200	상도동 373-61	322	대
201	상도동 373-70	9	대
202	상도동 373-72	13	대
203	상도동 373-74	13	대
204	상도동 373-75	22	대
205	상도동 373-77	17	대
206	상도동 373-80	329	대
207	상도동 373-83	43	대
208	상도동 373-86	273	대
209	상도동 373-102	9	대
210	상도동 373-104	1	대
211	상도동 373-106	4	대
212	상도동 373-107	1	대
213	상도동 373-108	7	대
214	상도동 373-109	8	대
215	상도동 373-113	7	대
216	상도동 373-118	6	대
217	상도동 373-119	26	대
218	상도동 373-120	2	대
219	상도동 373-121	87	대
220	상도동 373-122	50	대
221	상도동 373-123	63	대
222	상도동 373-124	43	대
223	상도동 373-125	13	대

연번	위치	면적(㎡)	지목
224	상도동 25-36	15	도
225	상도동 25-39	24	도
226	상도동 25-40	54	도
227	상도동 25-41	156	도
228	상도동 25-45	507	도
229	상도동 25-50	3	도
230	상도동 25-51	37	도
231	상도동 25-54	32	도
232	상도동 26-20	24513	도
233	상도동 26-71	3847	도
234	상도동 26-73	1593	도
235	상도동 26-74	14	도
236	상도동 26-77	463	도
237	상도동 26-78	26	도
238	상도동 26-79	92	도
239	상도동 26-80	3	도
240	상도동 170-7	17	도
241	상도동 170-13	265	도
242	상도동 170-34	9	도
243	상도동 170-35	5	도
244	상도동 175-15	65	도
245	상도동 175-22	66	도
246	상도동 175-23	50	도
247	상도동 175-30	3	도
248	상도동 175-31	325	도
249	상도동 177-1	11	도
250	상도동 177-2	29	도
251	상도동 177-3	1	도
252	상도동 177-7	13	도
253	상도동 177-9	1	도
254	상도동 177-10	6	도
255	상도동 177-11	236	도

연번	위치	면적(㎡)	지목
256	상도동 177-13	1	도
257	상도동 179-30	5	도
258	상도동 180-1	30	도
259	상도동 181-62	1658	도
260	상도동 181-63	47	도
261	상도동 182-24	74	도
262	상도동 182-37	1140	도
263	상도동 182-38	60	도
264	상도동 183-2	63	도
265	상도동 363-62	22	도
266	상도동 363-63	6	도
267	상도동 363-192	42	도
268	상도동 363-193	1468	도
269	상도동 363-221	417	도
270	상도동 363-256	449	도
271	상도동 363-262	932	도
272	상도동 363-276	1	도
273	상도동 363-278	63	도
274	상도동 363-279	88	도
275	상도동 363-284	12	도
276	상도동 363-285	34	도
277	상도동 363-292	288	도
278	상도동 364-28	31	도
279	상도동 364-29	31	도
280	상도동 364-30	38	도
281	상도동 364-31	38	도
282	상도동 364-33	9	도
283	상도동 364-34	21	도
284	상도동 364-35	17	도
285	상도동 365-3	337	도
286	상도동 365-19	776	도
287	상도동 367-14	62	도

연번	위치	면적(㎡)	지목
288	상도동 368-3	149	도
289	상도동 368-13	49	도
290	상도동 368-34	97	도
291	상도동 368-45	5	도
292	상도동 368-55	15	도
293	상도동 369-3	178	도
294	상도동 369-14	10	도
295	상도동 370-8	295	도
296	상도동 370-11	291	도
297	상도동 370-17	36	도
298	상도동 370-22	87	도
299	상도동 370-38	366	도
300	상도동 371-1	30	도
301	상도동 371-3	27	도
302	상도동 371-5	10	도
303	상도동 371-6	1	도
304	상도동 371-11	39	도
305	상도동 373	506	도
306	상도동 373-4	15	도
307	상도동 373-5	238	도
308	상도동 373-18	4	도
309	상도동 373-21	595	도
310	상도동 373-40	8	도
311	상도동 373-50	301	도
312	상도동 373-51	10	도
313	상도동 373-59	32	도
314	상도동 373-71	36	도
315	상도동 373-82	134	도
316	상도동 373-101	26	도
317	상도동 373-105	24	도
318	상도동 373-110	130	도
319	상도동 373-111	42	도

연번	위치	면적(㎡)	지목
320	상도동 373-112	227	도
321	상도동 373-117	5	도
322	상도동 산13-16	16	도
323	상도동 산15-35	116	도
324	상도동 산15-39	430	도
325	상도동 산15-40	258	도
326	상도동 산15-41	18	도
327	상도동 25-34	163	임
328	상도동 산15-16	753	임
329	상도동 산15-20	195	임
330	상도동 산15-26	357	임
331	상도동 산15-29	7	임
332	상도동 산15-37	40	임
333	상도동 산15-38	9	임
334	상도동 산15-42	281	임
335	상도동 902	1068.7	잡
336	상도동 178-1	6	전
337	상도동 178-9	11	전
338	상도동 363-30	13	전
339	상도동 179-1	430	차
340	노량진동 328	4467.2	종
341	노량진동 328-1	75.6	도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토지(존치관리구역)

연번	위치	면적(㎡)	지목
1	노량진동 230-32	99.8	구
2	노량진동 229-112	82.3	대
3	노량진동 230-2	10.6	대
4	노량진동 230-3	46.2	대
5	노량진동 230-4	99.7	대
6	노량진동 230-5	59.3	대
7	노량진동 230-6	174.8	대

연번	위치	면적(㎡)	지목
8	노량진동 230-9	191.3	대
9	노량진동 230-10	165.1	대
10	노량진동 230-13	4	대
11	노량진동 230-14	1670	대
12	노량진동 230-16	91.2	대
13	노량진동 230-17	9.3	대
14	노량진동 230-18	146.4	대
15	노량진동 230-19	333.1	대
16	노량진동 230-21	27	대
17	노량진동 230-23	178.2	대
18	노량진동 230-24	113.2	대
19	노량진동 230-25	120.6	대
20	노량진동 230-47	0.3	대
21	노량진동 309-8	302.3	대
22	노량진동 309-18	74.9	대
23	노량진동 309-19	7.3	대
24	노량진동 309-20	12.9	대
25	노량진동 309-41	129	대
26	노량진동 309-55	310	대
27	노량진동 309-56	266.4	대
28	노량진동 309-57	280.8	대
29	노량진동 310-4	173.8	대
30	노량진동 310-5	88.8	대
31	노량진동 310-13	9.8	대
32	노량진동 310-41	147.3	대
33	노량진동 310-43	49.7	대
34	노량진동 310-47	8	대
35	노량진동 310-50	41.1	대
36	노량진동 310-51	162.8	대
37	노량진동 310-53	199.4	대
38	노량진동 310-55	214.4	대
39	노량진동 310-56	288.9	대

연번	위치	면적(㎡)	지목
40	노량진동 310-57	160	대
41	노량진동 310-58	22.4	대
42	노량진동 310-59	105.8	대
43	노량진동 310-60	60.4	대
44	노량진동 310-62	176.8	대
45	노량진동 310-63	18.1	대
46	노량진동 310-64	442.6	대
47	노량진동 310-65	426.6	대
48	노량진동 310-84	136.2	대
49	노량진동 310-85	3.7	대
50	노량진동 310-87	54.5	대
51	노량진동 310-88	27.9	대
52	노량진동 310-90	7.6	대
53	노량진동 310-99	194.3	대
54	노량진동 310-110	193.5	대
55	노량진동 310-114	135.2	대
56	노량진동 310-115	150.6	대
57	노량진동 310-116	241	대
58	노량진동 310-118	785.1	대
59	노량진동 310-120	150.7	대
60	노량진동 310-137	211.4	대
61	노량진동 310-150	861.9	대
62	노량진동 310-151	293.9	대
63	노량진동 310-160	74.2	대
64	노량진동 310-164	101.8	대
65	노량진동 310-204	210.3	대
66	노량진동 310-205	1.1	대
67	노량진동 311-7	163.6	대
68	노량진동 311-8	1134.6	대
69	노량진동 311-15	230.6	대
70	노량진동 311-20	62.4	대
71	노량진동 311-32	171.7	대

연번	위치	면적(㎡)	지목
72	노량진동 311-33	360.2	대
73	노량진동 311-36	28.7	대
74	노량진동 311-37	329.5	대
75	노량진동 311-39	206.2	대
76	노량진동 311-40	174.8	대
77	노량진동 311-42	258.6	대
78	노량진동 311-46	46.3	대
79	노량진동 311-48	118.2	대
80	노량진동 311-50	156.9	대
81	노량진동 327-3	114.8	대
82	노량진동 329-3	6299.8	도
83	노량진동 229-116	23.9	도
84	노량진동 230-49	209.5	도
85	노량진동 230-50	72.5	도
86	노량진동 230-51	55.1	도
87	노량진동 230-52	45.9	도
88	노량진동 230-44	40.3	도
89	노량진동 310-10	226.6	도
90	노량진동 310-18	48.9	도
91	노량진동 310-19	113	도
92	노량진동 310-20	120.6	도
93	노량진동 310-96	9	도
94	노량진동 310-1	82	도
95	노량진동 311-4	4.5	도
96	노량진동 311-56	61.2	도
97	노량진동 329-3	438.8	도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